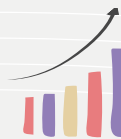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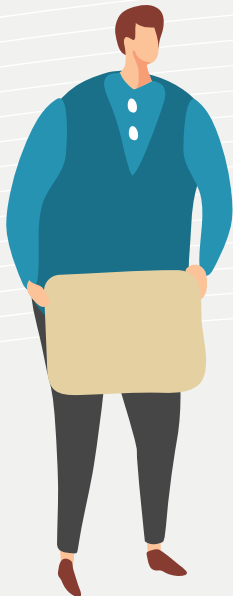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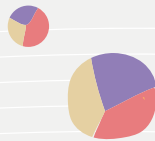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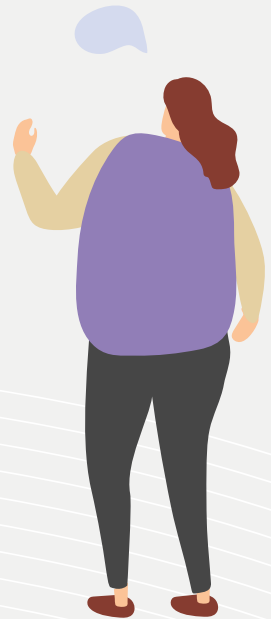




은평구 폭염관련 노동자 근무환경실태 연구 결과보고서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Eunpyeong-gu Labor Support Center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전 승인 없이 전재, 역재, 복제할 수 없습니다. 전(역)재의 경우, 반드시 「은평구 폭염관련 노동자 근무환경실태 연구 결과보고서(2023) 00페이지에서 전(역)재」 하였다는 출처를 명시한 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수록된 자료에 대한 질의 또는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02-6952-18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폭염관련 노동자 근무환경실태 연구

2023. 11. 30.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Eunpyeong-gu Labor Support Center

은평구 폭염기 위험직업군 노동환경 실태조사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은평구 폭염기 위험직업군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물로 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연구 수행 기관 : 노무법인 하이에치알

연구 책임자 : 이원희 노무사

〈목 차〉

I. 서 론	7
1. 연구 배경	7
2. 연구 목적	8
3. 연구 방법	8
II. 이론적 배경	11
1. 폭염관련 온열질환 실태	11
2. 폭염관련 법령 및 규칙	14
3. 폭염관련 정부 대책	24
4. 문헌 검토	38
III. 실태조사 결과	46
1. 실태조사 개요	46
2. 실태조사 결과	47
III. 결론 및 제언	82
1. 폭염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	82
2.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지원 마련	86
3. 조례 개정을 통한 대책 강화	91
〈참고문헌〉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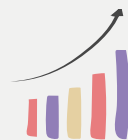
〈표 목차〉

〈표1〉 기상특보 및 폭염기준	11
〈표2〉 온열질환자 발생 통계 연도별 비교	12
〈표3〉 온열질환의 종류별 발생현황	13
〈표4〉 직종별 온열질환 발생현황	13
〈표5〉 실외작업 중 온열질환 발생 현황	13
〈표6〉 폭염특보에 대한 기준	21
〈표7〉 온열질환 종류와 주요 증상 및 현장 대응	22
〈표8〉 온열질환 자가진단표 및 자각증상 점검	28
〈표9〉 폭염단계에 따른 위기경보 수준	31
〈표10〉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 기준	32
〈표11〉 서울시 폭염관련 감시체계운영	35
〈표12〉 서울시 폭염관련 시설 대응 현황	35
〈표13〉 직업별 폭염관련 대안	41
〈표14〉 인터뷰 대상자의 개요	46
〈표15〉 인터뷰 내용	47
〈표16〉 도시가스점검원 매뉴얼	89
〈표17〉 조례 내 폭염취약계층의 범위에 대한 내용 비교	92
〈표18〉 조례 내 폭염관련 지원내용에 대한 내용	93

〈그림목차〉

[그림1] 작업장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시 조치 흐름도	23
[그림2] 폭염관련 정부의 전략 체계도	26
[그림3] 온열질환 자가진단표	28
[그림4] 온열질환 자각증상점검표	29
[그림5] 관계기관 합동 폭염대책 추진체계	30
[그림6] 공사현장 실측 온도 (건설노조 보도자료, 2023.8.9.)	44
[그림7]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사항 (안전보건공단, 2022)	53

I. 서론



I. 서론

1. 연구 배경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으로 인해 직접적인 건강영향이 심각해지고 있음.
2023년 경기도 안성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외부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하남소재 마트 주차장에서 쇼핑카트 정리하던 30대 노동자가 사망하기도 하였음(경향, 2023.7.2.)
- 2022년 온열질환자 발병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의 통계에 따르면 실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581명, 실내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127명으로 나타났다.
-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인 열사병과 같은 급성 열 질환을 넘어서 심혈관, 호흡기 및 기타 급성 질환과 생식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악화시켜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사고로 인한 부상 관련 사망률이 증가함(이상윤, 2023).
- 특히 이러한 폭염은 사실 장시간의 노출을 피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적응행동을 함으로써 줄일 수 있으나 중단할 권리를 둘러싼 기업의 노동자 관리 관행, 사회경제적 고용 요인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하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야외근로자 일수록 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직종별로 건설업, 택배/배달, 농업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채여라 외, 2019)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폭염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대응은 미온적이며,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제567조 제2항으로 2022년 8월 10일부터 폭염 하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소금과 깨끗

한 음료를 갖추어 두며,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KOSHA-GUIDE를 통해 온열질환 예방 지침을 만들었으나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함.

- 또한 2018년 이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2019년 9월 18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를 개정하여 폭염을 자연 재난에 포함하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폭염에 노출되어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해당 정책이 구체적으로 작동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지 검토가 필요함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은 아래와 같음

- 폭염으로 인한 야외노동자로 건설노동자, 배달노동자 그리고 도시가스검침원의 영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함
- 더불어 은평구 내 폭염관련 대책을 파악함으로써 개선 방안을 모색

3.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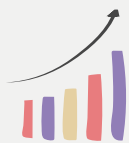
○ 문헌 조사

- 2023년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온열질환의 실태, 폭염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정부의 대책, 그리고 폭염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각종 논문 및 신문기사를 정리함으로써 현재 현장을 규제하고 있는 각종 지침에 대한 파악을 함

○ 인터뷰

- 폭염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건설노동자, 배달 노동자 및 도시가스 점검원에 대한 반 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al interview)를 통해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해당 현장에서 폭염관련 대책이 작동하고 있는지, 추후 현실을 반영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함

II. 이론적 배경



II. 이론적 배경

1. 폭염관련 온열질환 실태

○ 폭염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많이 문제제기 되는 것은 온열질환 임. 우리 몸은 지속적으로 열을 생성하므로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열을 외부로 전달해야 하고 이를 위해 혈관 확장 및 땀 흘림과 같은 정상적인 열 손실을 시행함

- 그러나 정상적인 체온조절에 문제가 발생하면 고 체온 증을 피하기 위해 생리적 구조가 추가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열 관련 질환이 발생하게 됨

○ 폭염에 대한 기상 특보 및 폭염 기준을 살펴보면,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발동 되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와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발동 됨

〈표1〉 기상특보 및 폭염기준

기상특보 (기상청)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
폭염 주의보	①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 경보	①일 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출처: 행정안전부, 2023)

○ 이러한 기준 하에 질병관리청의 온열관련 통계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2023년에는 전년도 대비 80%나 증가하여 두 배에 가까운 질환자가 발생했음. 사망자 수도 2023년 무려 32명이 발생하여 전년도 대비 2.5배가 증가하였으며, 2021년 대비에도 60%나 증가하였음.

〈표2〉 온열질환자 발생 통계 연도별 비교

	2023		2022		2021		2020	
	질환자	추정사망자	질환자	추정사망자	질환자	추정사망자	질환자	추정사망자
전체	2,816	32	1,564	10 ¹⁾	1,376	20	1,078	9
서울	199	1	110	7	121	8.8	38	3.5

전체

서울

(출처: 질병관리청, 연도별 통계 결합)

○ 서울의 경우에도 2023년에는 전년도 대비 질환자가 110명에서 199명으로 증가하여 무려 80.9%가 증가하였음

○ 다양한 심혈관, 호흡기 및 기타 급성 질환과 생식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악화시키며, 체열발산, 육체 작업이 증가하고 개인 보호 장비의 사용과 같은 기존의 직업적 열 스트레스 요인이 더해지면 더욱 위험한 존재임

- 2023년도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의 상세한 통계를 살펴보면 열 탈진이 1,597명으로 56.7%에 달하였고, 그 외에도 열사병이 492명으로 17.5%, 열 경련이 432명으로 15.3%에 달하였음

1) 질병관리청의 보고 수는 9명이나 행안부에서는 비 응급실 온열질환 사망자 (남성, 80대, 농밭)을 포함하여 10명으로 집계함

〈표3〉 온열질환의 종류별 발생현황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기타	전체
빈도	492	1597	432	235	1	59	2,816
비중 (%)	17.5	56.7	15.3	8.3	0.0	2.1	100

(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또한 온열질환 발생 직종을 살펴보면, 단순노무 종사자가 591명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 어업 숙련자가 247명으로 8.8%, 2순위를 차지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단순노무 종사자는 특히 야외에서 근무하는 건설노동자나, 농업에 종사하는 자, 배달 노동자 등이 이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4〉 직종별 온열질환 발생현황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군인	기타	전체
빈도	20	86	62	83	27	247	87	119	591	61	1,433	2,816
비중 (%)	0.7	3.1	2.2	2.9	1.0	8.8	3.1	4.2	21.0	2.2	41.3	100

(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실외에서 작업 하던 중 온열질환 발생건수는 총 2,816건 중에 2,241건으로 총 79.6%를 차지하였는데, 보다 상세하게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작업장에서 발생한 건수가 913건으로 32.4%를 차지하여 제일 많았고, 그 다음 순위가 395건으로 논밭에서 14%가 발생하였음

〈표5〉 실외작업 중 온열질환 발생 현황

	계	작업장	운동장 (공원)	논밭	산	강가/해변	길가	주거지 주변	기타
빈도	2,241	913	171	395	72	32	284	105	269
비중(%)	79.6	32.4	6.1	14.0	2.6	1.1	10.1	3.7	9.6

(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2. 폭염관련 법령 및 규칙

가. ‘고열’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폭염

○ 폭염 관련한 법령 및 규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을 살펴본 결과, 폭염을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가장 관련된 것은 ‘고열’ 과 관련된 작업에 대한 산업안전 내용이었습니다.

- 해당 ‘고열’과 관련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59조에 정의되어 있음. ‘고열작업’에 관하여 13가지 해당 작업을 예시하고 있으나 폭염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제559조 제2항에 ‘한랭작업’이, 제3항에 ‘다습작업’이 정의되어 있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고열작업 등) ① “고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용광로, 평로(平爐), 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이나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2. 용선로(鎔船爐)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3. 가열로(加熱爐)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가열하는 장소
4. 도자기나 기와 등을 소성(燒成)하는 장소
5. 광물을 배소(焙燒) 또는 소결(燒結)하는 장소
6. 가열된 금속을 운반·압연 또는 가공하는 장소
7. 녹인 금속을 운반하거나 주입하는 장소
8. 녹인 유리로 유리제품을 성형하는 장소
9. 고무에 황을 넣어 열처리하는 장소
10. 열원을 사용하여 물건 등을 건조시키는 장소
11. 갱내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장소
12. 가열된 노(爐)를 수리하는 장소
1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② “한랭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다량의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2. 냉장고·제빙고·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③ “다습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염색조로 염색하는 장소
2.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금속·비금속을 세척하거나 도금하는 장소
3. 방적 또는 직포(織布) 공정에서 가습하는 장소
4.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가죽을 탈지(脫脂)하는 장소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나. 폭염관련 유일한 관리의무조항-그늘진 장소, 물, 휴식시간

○ 유일하게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67조 제2항으로 2017년 12.28일에 신설되었고, 2022년부터 8월 10일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폭염하에 옥외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그리고 동 규칙 제571조에 따라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또한 동 규칙 566조에 휴식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여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p>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사업주는 <u>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u> <신설 2017. 12. 28.></p> <p>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p>
<p>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2. 8.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2. <u>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u>

○ 그러나 고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해당 시행령, 규칙 등에 명기된 관리 내용을 살펴보면, 훨씬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음

-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일단 고열관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38조에 선언적으로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해 제39조(보건조치)는 열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조치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p>산업안전보건법</p> <p>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p> <p>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p>2. 방사선, 유해광선, <u>고온</u>,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p> <p>제139조(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p> <p>②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 <p>제99조(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p> <p>③ 법 제1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p> <p>2. <u>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u></p>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 <p>제560조(온도·습도 조절) ① 사업주는 <u>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u>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온도·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여 별도의 건강장해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외부의 대기온도보다 현저히 낮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냉방장치를 가동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근로자에게 보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561조(환기장치의 설치 등) 사업주는 <u>실내에서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환기장치 설치, 열원과의 격리, 복사열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u> 하여야 한다.</p> <p>제562조(고열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열경련·열탈진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근로자를 새로 배치할 경우에는 <u>고열에 순응할 때까지 고열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등</u> 필요한 조치를 할 것</p> <p>2. 근로자가 온도·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u>온도계 등의 기기를 작업장소에 상시 갖추어 둘 것</u></p>
--

- (근로시간의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와 동 시행령 제99조에서 '다량의 고열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은 유해 위험한 작업이므로 1일 6시간 및 1주 34시간 범위에서 행하도록 하고 있어 고열작업 시 근로시간이 제한됨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온도 및 습도의 조절)** 고열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동 규칙 제560조에 사업주는 냉난방 또는 통풍을 위한 적절한 온도, 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외부온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 **(환기장치의 설치 및 고열장치 예방 조치)**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 동 규칙 제561조를 토대로 실내에서 고열 작업으로 인해 열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낮추기 위해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제562조를 통해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 발생 가능한 열경련, 열 탈진을 예방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업무에 적응하도록 조절하고, 열을 측정하기 위한 온도계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렇듯 폭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관리 의무로 부여 하고 있는 사항들은 고열 작업에 포함된 다양한 온도, 습도의 조절, 환기 장치에 대한 설치, 온도계, 근로시간 제한 등의 내용은 적용받지 못한 채 별도의 물, 그늘 막, 근로시간 축소 등의 조항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음

다. 기타 재해 관련 법령 및 규칙의 적용 내용

○**(작업중지권)**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와 제52조에 근거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나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관리자는 지체 없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폭염으로 인해 작업 도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근로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작업 중지를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이를 위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

-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란 높이 2미터인 장소에서 작업발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흠막이 지보공 등의 설치가 기준에 맞지 않아 붕괴의 우려가 있거나, 유해물질, 인화성 물질 등으로 질식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등의 경우로 들고 있어, 폭염과 같이 열사병의 발생이 가능한 상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p>산업안전보건법</p> <p>제51조(사업주의 작업 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52조(근로자의 작업 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의 예시>(출처: 고용노동부, 2019)</p> <p>① 높이가 2미터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p> <p>②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흠막이 지보공 등 가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p> <p>③ 토사, 구축물, 공작물의 변형 또는 변위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p> <p>④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p> <p>⑤ 화학물질 취급공정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p> <p>⑥ 밀폐공간 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하지 않았거나 적정공기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p> <p>⑦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p>

-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허가는 필요 없으나, 작업중지가 다른 근로자나 일반 대중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작업 중지 후 보고를 하고 작업 중지로 인해 임금 청구권은 상실되지 않음
- 만일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기준은 개별근로자의 판단이지만 판단의 착오가 있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음
- 또한 급박한 위험이 아닌 경우에는 작업을 거부할 수 있음²⁾

2) http://kaohn-webzine.kr/bbs/board.php?bo_table=a_1&wr_id=17&pu_id=202207, 직업건강협회

○(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고, 건설업은 동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는 기초 교육으로 4시간 이상,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 최초 노무 제공시 2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 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배달 라이더를 위한 산업안전에 대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로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 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조치 및 보건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제32조 제1항의 10호에 따라 배달종사자에게 보호구의 지급, 제33조 보호구의 관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주는 등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휴게시설의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 2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은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배달원의 경우에는 20인 미만이어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이 때 휴게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2에 따라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 높이 등 최소 바닥면적을 정하여야 하고, 공동휴게실은 왕복 이동에 걸

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적정 온도를 위한 냉난방 기능과 식수 및 비품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p>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p> <p>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라. 배달원 [본조신설 2022. 8. 16.]</p>
--

라. 산업안전보건 공단의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예방 지침 (2022): KOSHA GUIDE

○ KOSHA GUIDE (H-219-2022)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562조(고열장해 예방조치)에 의거 열사병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는 등, 고용환경에서 작업하는 혹서기 옥외근로자, 온열 현장 작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적용범위) 여름철 건설, 토목 등의 공사, 조경, 삼림 농사 등 옥외에서 작업으로 인해 근로자의 이상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계절과 관계없는 고열작업환경에는 적용하지 않음

○(용어의 정의): “온열질환”은 열경련, 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을 통칭하는 고열로 인한 건강장해, “체감온도”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체감온도 정보로 5월~9월까지만 적용하며, 기상청 측정소와 작업장소가 멀거나 자체적인 관리체계가 있는 경우 습구혹구온도지수(Wet-Bulb Globe Temperature: WBGT)사용

○(체감온도 기간 폭염특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구분하고 적용은 기상특보발령 기준으로 함

〈표6〉 폭염특보에 대한 기준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일최고체감온도 33°C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될 때 ②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일최고체감온도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체감온도와 폭염특보에 따른 대응)

-최고 체감 온도가 31°C 이상으로 예보되는 경우 그늘, 물, 민감군 확인

그늘은 차양막이나 그늘막으로 하고, 그늘막 아래 의자, 돛자리, 음료수대 등 비품 비치, 소음이나 낙하물, 차량 통행과 같은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 시원한 바람이 통하여야 하며 햇볕 차단 재질 사용. 민감군은 과거 온열질환 경험자, 만성질환 및 내분비 질환여부, 고령자, 불침투성 작업복,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의 노동강도로 일하는 자

-최고 체감온도가 33°C 이상 이거나 폭염주의보 발령 시

매시간 10분 씩 그늘 휴식, 오후 2시~5시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민감군 추가 휴식시간,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보냉 장구 준비 및 사용

- 최고 체감온도가 35°C 이상 이거나 폭염 경보 발령 시

매시간 15분씩 그늘 휴식, 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중지, 아이스 조끼, 아이스 팩 보냉장구 준비 및 사용

-최고 체감온도가 36°C 이상이거나 폭염경보 발령시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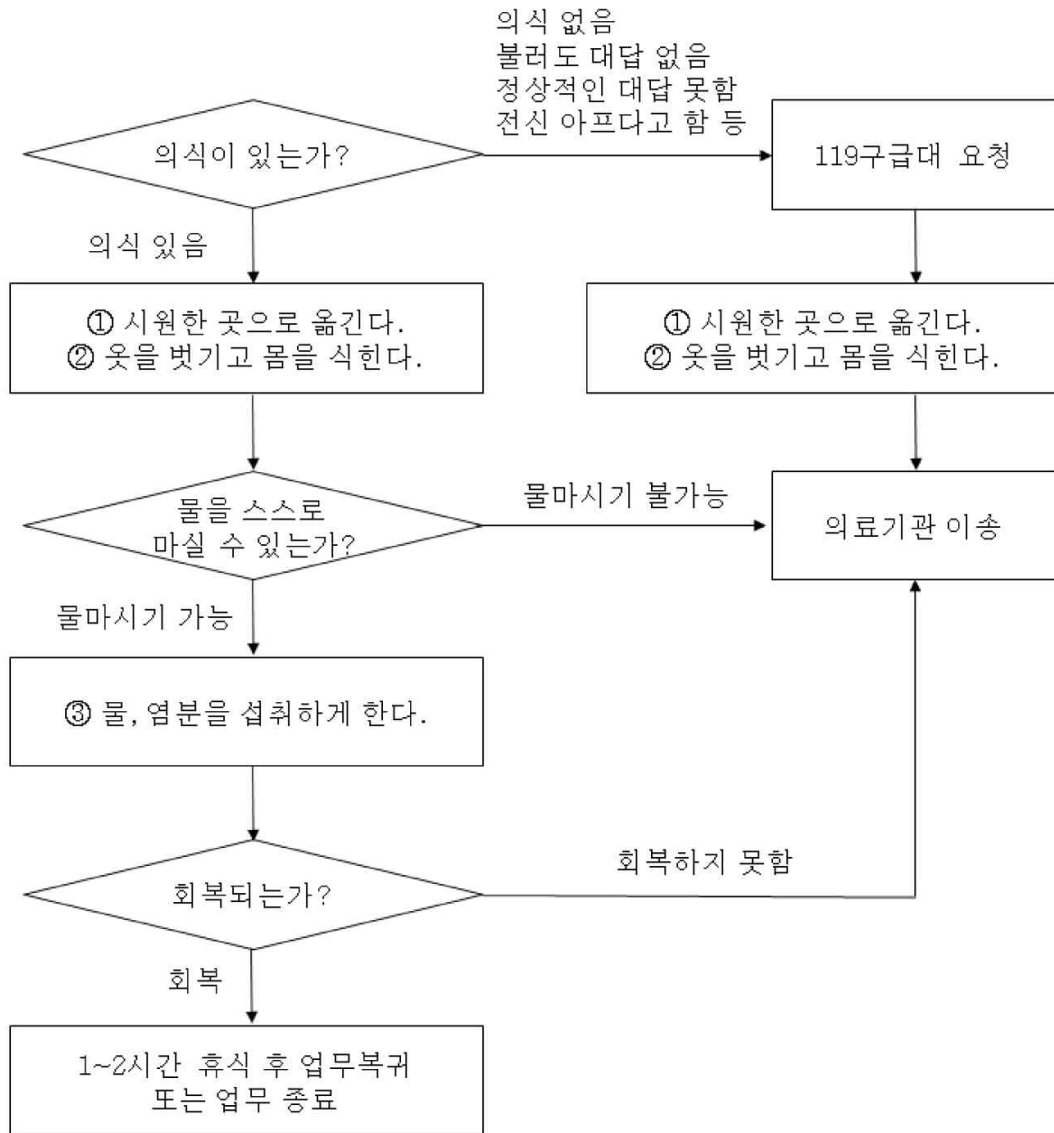
○ (온열질환 의심자 대응) 온열질환 의심사례인 열사병 및 각종 열관련 질환의 특징은 아래와 같음

〈표7〉 온열질환 종류와 주요 증상 및 현장 대응

질환 종류	주요 증상	현장 대응
열사병	현기증, 악의, 두통, 경련 등의 전구증상 의식상실(기절) 뜨겁고 마른 피부 체온 40℃ 이상	즉시 119 신고 및 이송 옷을 모두 벗김 냉수 뿌리기, 선풍기, 얼음 마사지
열탈진	두통, 구역감, 현기증, 무기력증, 갈증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물과 염분 보충*
열경련	수의근에 통증이 있는 경련 발생 사지 동통, 발작적 경련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물과 염분 보충*
열허탈	전신권태, 탈진, 현기증 의식상실(기절) 심박수 증가, 혈압 저하 정상 체온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물과 염분 보충* 의식 없을 경우 의료기관 이송
열피로	구갈, 소변량 감소, 현기증, 사지의 감각이 상, 보행곤란 실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물과 염분 보충* 의식 없을 경우 의료기관 이송
열발진	땀띠 붉은 구진	발생부위 냉각 세척 후 건조

*스포츠음료(이온음료), 알칼리가 없는 과일주스, 또는 물 1L에 소금 1티스푼 미만을
탄 소금물을 말한다. 소금 혹은 식염정 그대로를 복용하여서는 안 된다.

질환자가 작업장에서 발생하였을 때 조치 흐름은 다음과 같이 시행됨



[그림1] 작업장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시 조치 흐름도

○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적정 배치, 건강 상담, 작업 개시 전 건강상태 확인, 작업 중 주기적으로 순회하여 상담, 수분이나 염분의 보급, 휴게실에 혈압계, 체온계 비치

○ **(안전보건교육)** 옥외 작업을 지휘 감독하는 자와 작업근로자에게 △고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고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법 △응급 시의 조치사항을 교육

3. 폭염관련 정부 대책

가. 그간 정부의 폭염관련 대책

○폭염관련 정부 대책은 2005년 소방방재청에서 처음 수립되었고,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자연 재난에 폭염이 포함되면서 범정부 폭염종합대책으로 발전하였음

- 그리하여 행정안전부 등 17개 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 TF 팀이 매년 폭염대책기간(5.20~9.30)에 운영되며, 부처 합동, 시도, 시군구 수준까지 폭염상황관리 체제를 유지하며 폭염특보 발령, 취약계층 보호 등 폭염피해예방과 대응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음(채수미 외, 202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된 이래 2019년에 범정부 폭염 종합 대책으로 4대 추진 전략으로 ▲범정부 폭염대응체계 확립 ▲국민 체감형 폭염대책 추진 ▲폭염 저감 시설 확충 및 피해 최소화 ▲대국민 인식 개선 및 폭염 인프라 구축을 세우고, 14개 중점과제를 운영하였음.

- 그러나 코로나 19의 발생과 폭염이라는 복합재난으로 기존의 매뉴얼을 준용하지 못한 채 관계부처의 대응은 효율성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통제를 강화하는 형태로 나타났음.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라 폭염기간 내 폭염저감 시설인 무더위 쉼터는 임시 휴관을 하였고, 폭염취약계층의 에너지 빈곤 문제가 전면으로 부각되었음(배재현, 2021).

○ 2022년에도 행정안전부는 ‘2022년 여름철 태풍,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나 폭염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목표로 ‘폭염 3대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음. ▲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취약성을 진단하는 자가진단 목록을 배포하고, ▲읍면 농촌 지역 폭염 안전 사각지대 위주 예찰·홍보 강화

를 위해 9개 시·도 농업기술원, 154개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고령층 농업인 대상 폭염 대처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였음. 또한 ▲ 전국 646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거점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고 지능형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건강 확인을 병행하는 등 취약계층 폭염 인명 피해 방지를 추진하였음. 특히 폭염 3대 취약 분야 (논밭 작업자, 건설현장 등 야외 작업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을 진행하였음.

- 그러나 이에 대해 현장근로자의 경우 ‘온열질환 특성 자가 진단표’의 도입 취지는 좋았으나 웹서비스 이용실적(11,750회)이 저조 하고, 논밭 작업자에 대해서도 고령층 대상 홍보효과가 부족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 등은 위치나 운영여부를 모르거나 편의성이 부족하여 실제 이용이 저조했다는 평가를 하였음. 특히 범정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적 관점의 폭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봄(행정안전부,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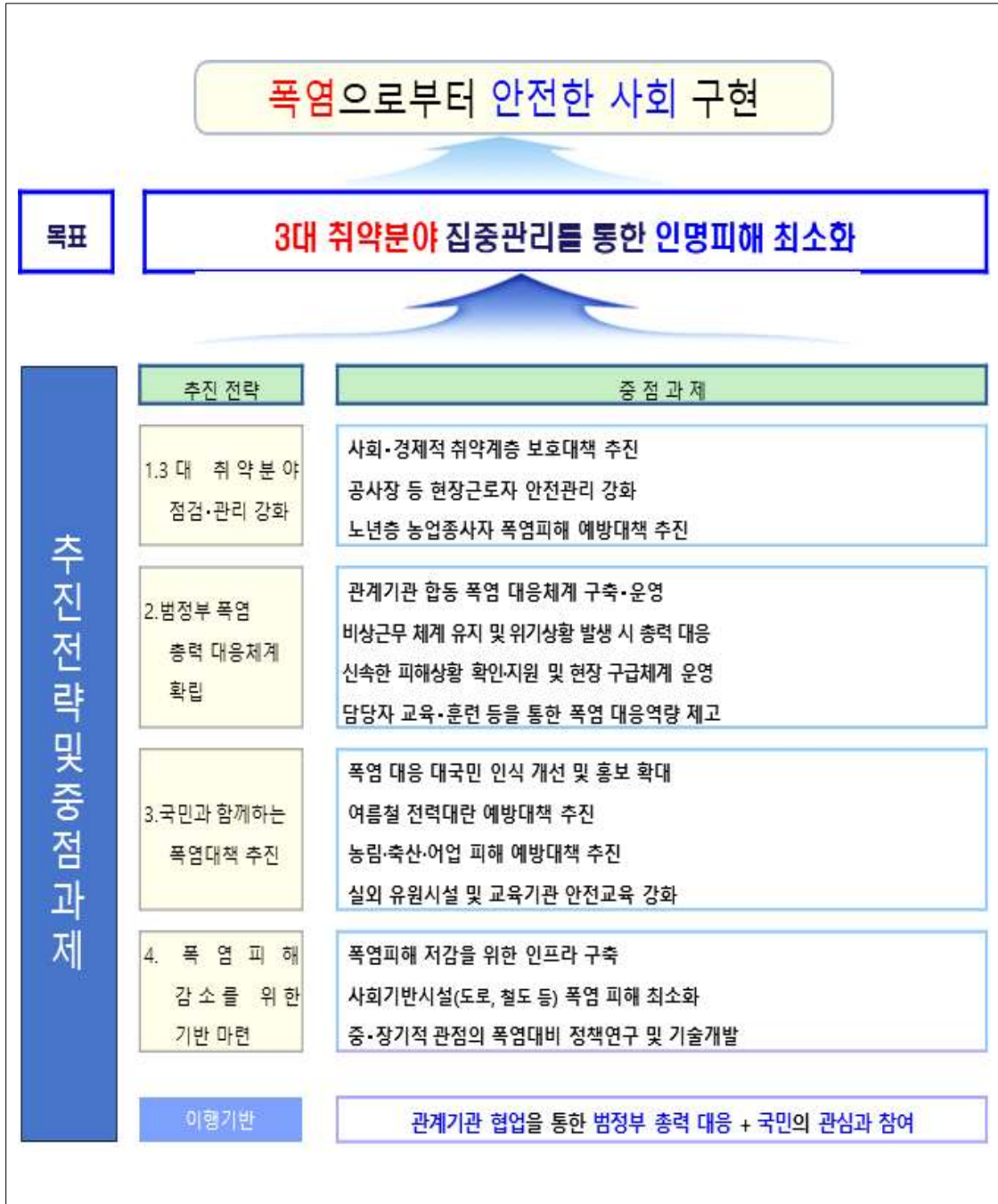
나. 2023년 폭염관련 정부의 대책³⁾

○ 2023년 폭염관련 정부의 대책은 4가지 추진 전략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음. ▲3대 취약분야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범정부 폭염 총력 대응체계 확립 ▲ 국민과 함께하는 폭염 대책 추진 ▲폭염피해 감소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중점과제는 14개를 수립하였음.

- 3대 취약분야 점검 관리는 ①사회경제적 취약 계층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② 공사장 등 현장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③ 노년층 농업 종사자 폭염 피해 예방 대책 추진을 하도록 하였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 취약 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22년 4만원-> ’23년 4.3만원)를 지원하고, 전기요금 복지 할인, 경로당 6.8만개 소 냉방비 지원(‘22년 월10만원-->’23년 월11.5만원(+1.5만원))을 추진하였음. 또한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를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을 개선하여 홍보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 생활지원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취약노인에게 전화방문을 통한 안전 확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 특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시군구 광역지원기관과

3) 해당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에 발표한 「2023년 폭염종합대책」을 요약 발췌하였음

연계하고 시도 중앙 노인 돌봄 지원기관에서 복지부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림2] 폭염관련 정부의 전략 체계도

- 공사장 등 현장근로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폭염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 되는 경우 발주처에서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 시키도록 관련 기관에 권고하였고 만일 발주 기관이 공사를 정지하면 계약 기간 연장 및 계약 금액을 조정하고 공

사를 정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염재난으로 인정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공사업체에 지체상금을 미부과하도록 하였음.

- 또한 고용부, 국토부, 행안부, 지자체를 통해 건설현장 등에 폭염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소규모 건설현장 위주로 예찰 활동 강화, 물그늘휴식 등의 행동요령을 홍보 및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음.

폭염 대응요령 사업장 홍보내용

- ❖ 열사병 3대 예방수칙(물, 그늘, 휴식) 및 무더위 시간(14 ~ 17시)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권고
- ❖ 옥외작업시 가급적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 ❖ 작업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홍보

(출처: 행안부, 2023)

- 그리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열사병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고, 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장⁴⁾도 산업에도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음.
- 특히 공사장 등 야외근로자 대상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시범적용을 하였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는 온열질환 자가진단표와 자각증상 점검표로 구분하여 운영하였으며, 만일 평소 고위험자로 작업중 실시한 자각 증상 점검 결과가 높은 체온, 두통 이상 발생시 작업 휴식을 권고하도록 함.


4) 산업안전보건법 제 128조의 2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 2에 따라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의무

〈표8〉 온열질환 자가진단표 및 자각증상 점검

구분	점검시기	목적	비고
온열질환 자가진단표	작업전	체질점검(온열질환 취약도)	1회
자각증상점검표	점심시간	증상점검(온열질환 증상유무)	수시

* 온열질환 취약도가 높은 근로자는 평소 고위험자로 특별관리, 작업 중 실시한 자각증상 점검결과 높은 체온, 두통 등 이상 발생 근로자는 작업휴식 권고

아외근로자용 온열질환 특성 자가진단표



온열질환(폭염으로 인한 질환) 관련 자가진단 조사표				
나는 '더위 먹었다'고 느낀 증상(어지러움, 두통, 열, 경련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예		아니오
문항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아니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
1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일을 맡기면 믿을 수 있다고 한다.			
2	내가 맡은 일은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 한다.			
3	나는 일을 시작하게 되면 실 틀이 거의 없다.			
4	나는 작업할 때 (에어컨을 틀어두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더위를 느낀다.			
5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도 내게는 계속 일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6	나는 금전적 문제를 노력해서 극복해내었거나, 이를 위해 지금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7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			
8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9	부모님(한분이라도)은 내게 참아야 한다고 (말하거나 은연중에) 가르치셨다.			
10	부모님(한분이라도)은 근면 성실한 것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11	아래의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다. ● 질환 : 당뇨, 고혈압, 심장병, 신장병, 피부질환, 정신질환 ● 약 : 수면유도제, 혈압약, 이노제, 신경·정신질환약			
총 점수 (44점 만점)				
판별	기준 점수	27점 이하	28점~32점	33점 이상
	온열 질환 취약도	낮음	보통	높음
비고	-	폭염 시기 보통 주의 필요	폭염 시기 높은 주의 필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

[그림3] 온열질환 자가진단표

○ 그 외에도 노년층 농업종사자 폭염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여 ▲농업인 지원 공공기관 중심 폭염 예방요령 집중 홍보하고 농작업 안전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에 온

열질환 예방 항목을 추가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논밭 작업자 예찰 활동 및 마을 방 송 차량 방송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 범정부 폭염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 재난 관리 주관기관은 행정안전부로 하고 복 지부, 고용부, 질병청으로 하여금 온열 질환자를 집중 관리하도록 하고 지방 자치 단 체는 무더위 쉼터 운영, 취약계층 보호·예찰 등 관계 중앙부처와 협업하여 지역단위

야외근로자용 온열질환 자각증상 점검표



온열질환 자각증상 점검표

현재 느껴지는 증상을 체크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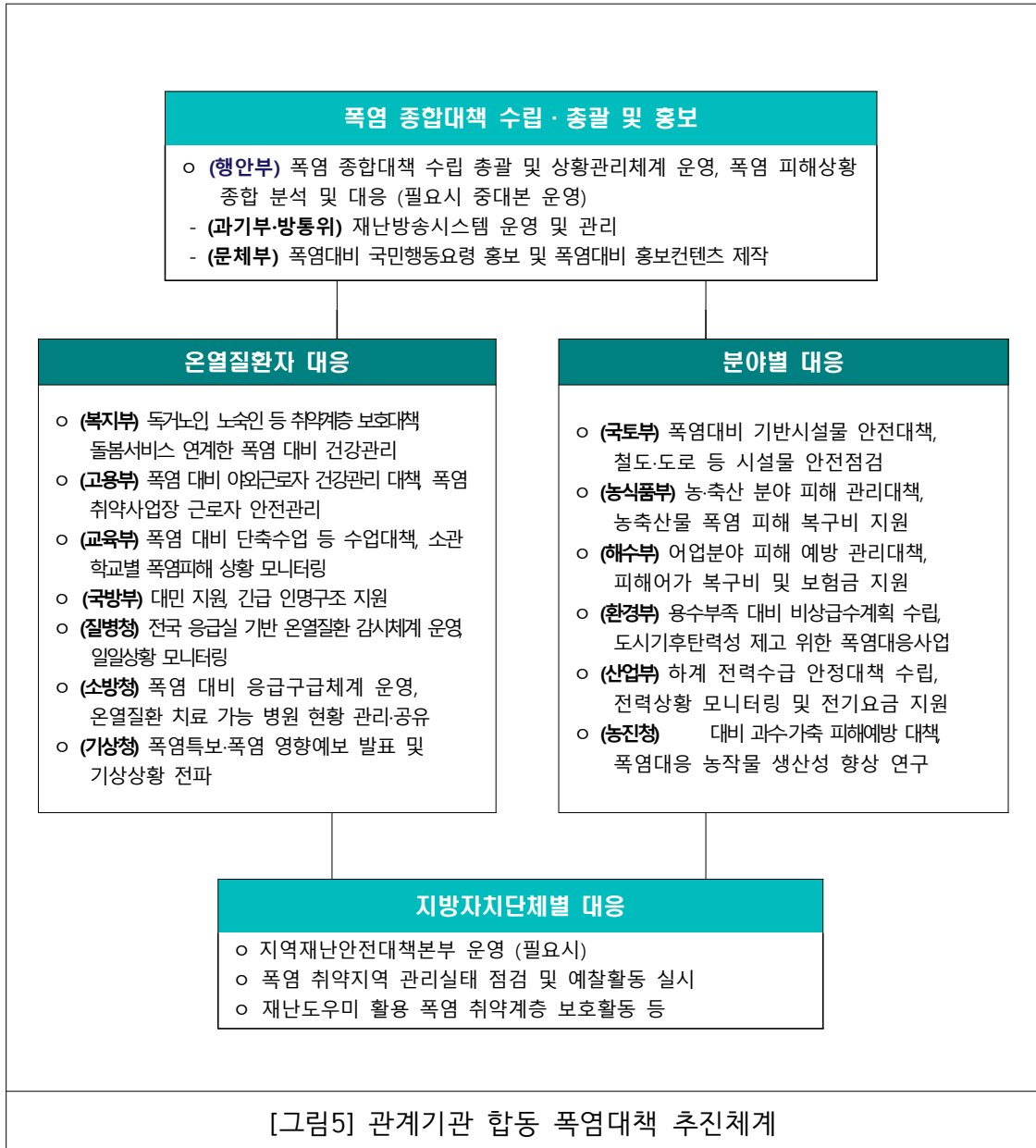
구분	문항내용	예	아니오
1	평소보다 높은 체온		
2	두통		
3	어지러움		
4	메스꺼움		
5	근육경련		
6	지나치게 많은 땀을 흘림		
7	구역질		
8	갑작스러운 피로감		

2개 이상 '예'라고 답한 경우

-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햇빛의 노출을 피하세요.
- 시원한 물 마시기, 시원한 물로 샤워하여 체온을 낮추세요.
-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일시적 휴식을 취하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였음



- 또한 폭염대책기간(5.20~9.30) 중 특보 발령 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여 위기 관리 매뉴얼에 근거하여 3단계 상황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위기 경보 수준에 따라 대응 강화, 취약계층 보호대책 강화, 중대본 가동 등을 조치하였음
- 주의/ 경계단계에는 초기 대응을 하도록 하고 심각단계에는 중대본에서 1단계에서 3단계 까지 조치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중대본이 가동된 사례는

1회 엮음

〈표9〉 폭염단계에 따른 위기경보 수준

구 분	판단기준	주요활동	비상단계	
관심 (Blue)	○ 폭염 대책기간(5.20.~9.30.)	징후 감시활동	상시대비 단계	
① 주의 (Yellow)	○ 일부지역(특보구역의 1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협조체계 가동	사전대비 단계	
② 경계 (Orange)	○ 지역적(특보구역의 40% 이상)으로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일부지역(특보구역의 1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대비계획 점검		
③ 심각 (Red)	○ 지역적(특보구역의 40% 이상)으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일부지역(특보구역의 1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즉각 대응태세 돌입	총 대 본	비상 1단계
	○ 광역적(특보구역의 60% 이상)으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지역적(특보구역의 40% 이상)으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비상 2단계
	○ 전국적(특보구역의 80% 이상)으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광역적(특보구역의 60% 이상)으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비상 3단계

-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폭염 대응 활동 정보를 공유하며 상황대응 핫라인을 유지하고 피해 상황을 파악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폭염특보 발령 시 피해현황, 취약계층 보호활동, 예찰활동, 홍보실적 등 일일 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였음

○ 그 외 국민과 함께 하는 폭염대책을 추진하여 ▲폭염 대응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홍보 확대 ▲여름철 전력 대란 예방 대책을 추진하며 ▲농림, 축산, 어업피해 예방대책을 추진 ▲실외 유원시설 및 교육기관안전교육 강화를 추진하였음

○ 특히 폭염피해 감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취역계층, 지역 폭염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폭염대응 사업을 지원하고 폭염취약 지역에 쉼터 조성, 소규모 물길 쉼터, 벽면녹화, 지붕차열 페인트 도포를 추진하고 ▲사회 기반 시설(도로, 철도 등) 폭염피해를 최소화 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염 대비 정책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도록 하였음



다. 고용노동부의 폭염관련 안전 대책

○ 고용노동부는 2022년 산하 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령이나 규칙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옥외 근로자의 폭염 관련하여 기본적인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마련하였고 이를 지방 관서별로 홍보를 통해 각 작업장에 전달하였음

○또한 2023. 3‘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사업을 개발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 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로 신청 가능함), 중소기업기본법에 기초한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을 위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하도록 하였음

<표10>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최대지원한도	지원기준	비고
	따라 차등적용	(본사)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공사현장 수의 200% 이내 지원 * 반출입 대장 작성(손망실·도난 방지) (제조업 등) 작업현장에 한해 지원하되, 상시근로자 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수 초과 지원 불가 (단, '20~'22년 기지원대수는 차감)	▶ 전/후 온도측정 불필요 ▶ 사후기술지도 1~3년 ▶ 냉풍기 사무실용 지원 불가
	그늘막 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건설업 본사) 현장과 작업거리,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량 판단·지원* 반출입 대장 작성(손망실·도난 방지) (제조업 등) 지원 불가	▶ 사후기술지도 제외 (소모품)

○ 그 외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로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지원을 8월 한달 동안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온열질환 고위험 사업장에 1,166곳, 7,487명을 지원하였음⁵⁾

-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근로자 건강센터, 대한 산업안전보건 협회, 직업건강간호협회, 지역병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상담 및 콜레스테롤 등 간이 검사를 실시하고 고령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에 대한 특별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진행됨

라. 서울시 폭염관련 대응

○ 서울시는 2023.10.4. 「서울특별시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는 폭염을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에 따라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폭염예측 및 피해 전망, 각종 관리 대책과 지원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는 시장으로 하여금 실태조사, 폭염 취약 지역 예방활동, 재난 도움미의 운영을 하도록 하며, 폭염취약 계층의 지원과 안전교육 실시 등을 포함하고 있음. 특히 폭염취약계층의 지원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비 지급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폭염저감 시설의 설치 및 지원을 위해 시나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설치 사업이나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세한 내용은 시행규칙을 통해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5)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08291139058680632, 대한경제, 폭염 취약지대 건설현장, 찾아가는 서비스로 건강지켜요. 2023. 8.29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대한 대책 및 시민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에 따른 서울특별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구청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4. "폭염저감시설"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① 시민은 폭염특보가 발령한 경우 시와 자치구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폭염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예측 및 피해 전망
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대책
6.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8.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자문단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및 법인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8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실시
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폭염저감시설 안내 등 폭염 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
2. 선풍기 등 냉방용품 보급
3. 무더위쉼터, 살수시설, 차양막 등 폭염 회피·저감 시설 설치 사업
4. 온열질환 의료비 지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무더위쉼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의 냉방비 및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2. 폭염 대응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2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958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시는 「2023 서울시 여름철 폭염 종합 대책」을 추진하면서 ▲폭염대응체계 강화 ▲ 취약계층 보호 ▲폭염저감시설 확충 등을 주요한 방향으로 운영하였음

- 온열질환자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의료기관 64개소와 서울 시 자치구 보건소 등 26개소에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폭염특보 발효 시 119 순회 구급대를 운영함

〈표11〉 서울시 폭염관련 감시체계운영

구분	운영 구급차	펌블런스	구급대원
합 계	161대	119대	1,506명
서울	161	119	1,506

- 무더위 쉼터(경로당, 복지관, 야외쉼터 등)를 운영하여 상시일반쉼터 외에 폭염 특보 발령시 연장쉼터, 야간 쉼터를 연계 운영하며, 취약 어르신 정기 안부 확인과 쪽방주민 보호대책등을 운영함. 특히 노숙인과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혹서기 응급구호반의 운영, 최종증 독거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 서비스와 중증 재가 장애인에 대한 안전 확인, 온열질환 의료비 지원(최대 100만원)을 함
- 또한 물 전력 사용량 증가 대비 기전 설비 등 폭염 취약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 하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표12〉 서울시 폭염관련 시설 대응 현황

구분	그늘막		물안개 분사장치 (쿨링포그)	도로 살수장치 (쿨링로드)	지붕 차열 도장 (쿨루프)	도로 차열 포장 (쿨데크포장)	그늘목	기타 (스마트쉼터, 승강장, 시티트리, 기타)
	고정형	스마트						
서울	2,845	282	73	10	174	-	183	269

라. 은평구 폭염관련 대책

○ 은평구는 2021.9.30. 폭염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은

평구 폭염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폭염대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응 체계의 구축, 폭염 저감 조치의 체계적 지원과 무더위 쉼터 관리, 폭염 취약계층과 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폭염대비 구민 행동요령, 폭염 피해 예방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자연재해 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재난도우미, 사회 복지사, 등을 통해 폭염대비 행동요령 등을 진행하며 각종 지원 사업(도심열섬현상완화사업, 무더위 쉼터 확대 및 운영지원 사업,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관련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구민의 협조사항,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 등 필요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부서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1.09.30 조례 제144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0℃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0℃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5.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6.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
 - 라.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대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3. 폭염 저감 조치의 체계적 지원 방안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6. 폭염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방안
7. 폭염 대비 구민행동요령
8.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전담조직 설치·운영)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관련 사업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은평구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 및 전화 등을 활용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

제8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운영 사업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9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
3.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리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구민의 협조사항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시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에너지절약 홍보 캠페인
2. 폭염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 안내
3. 무더위쉼터 설치 및 운영 안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사항

제13조(관리·감독)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세우고 각 호의 관리부서에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설 관리부서
2. 폭염취약시설물 관리부서
3. 야외 근로자 관리부서
4. 폭염취약계층 관리부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의 관리부서

부 칙<제1440호, 2021.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은평구는 「2023 폭염종합대책」을 발표하고 5월 20일부터 9월 30일 까지 4개월 간 상황관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폭염피해 예방활동을 하였음

- 활동은 복지관, 경로당, 동 주민센터 등 188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개방하고 횡단보도, 교통섬 등에 그늘막 84곳을 운영함
- 낮 최고 기온 시간에 은평로 등 주요간선도로 6개 노선 27.8Km에 살수차를 동원하고 버스 정류장 9곳에 냉방시설 등 편의기능을 갖춘 스마트 쉼터를 운영하도록 하였음
- 재난 도우미, 우리 동네 돌봄단, 방문 간호사를 통해 독거어르신, 장애인, 거동불편자등을 대상으로 안부전화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공사현장에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을 권고할 방침임.

○ 그리하여 노인맞춤 돌봄 기관 2곳, 선풍기 579대, 풍기인견 여름 이불 800개, 지팡이 겸용 암막우산 760개를 지원하였음⁶⁾

- 노인 일자리 실외사업 참여자인 1,459명에 대하여 체온상태 확인, 수분섭취 유도, 야외활동 자제, 응급상황 대비 안내, 12시부터 17시 사이에 활동 자제 안내와 휴식시간 부여함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5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하였으며, 야외에서 일하는 배달, 택배, 대리 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게 생수를 지원하였음.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생수 2000병, 쿨키트(팔토시, 쿨 스킨, 물티슈), 이륜차용 반사스티커를 무료 배포하였음
- 특히 은평구 스마트 쉼터는 버스 정류소 9곳(△불광역 불광초등학교 △구산역 역촌중앙시장 △수곡사 입구 △연신내역 로테오거리 △역촌역 역촌오거리 △은평세무서 △서부병원 △응암역 신사오거리 △증산역)에 설치하였음

4. 문헌 검토

가. 채수미 외 (2020)의 연구

6) 은평구 홈페이지

○ 채수미외(2020) 연구는 민감 계층을 대상으로 폭염에 대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고 대응실태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특히 민감 계층의 폭염에 적응 역량과 건강문제를 도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그 결과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폭염 적응 지원 사례에 대해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와 보건 복지부의 재난도우미 운영 등에 국한되고 있어 소극적임을 지적하고 있음. 또한 폭염 민감계층에 대하여 건강영향을 검토한 바, 노인과 저소득 집단이 폭염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으며, 야외근로자 역시 건강피해를 호소하였음을 확인하였음. 저소득층은 에어컨 보유율은 상당 수준에 있으나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네트워크와 떨어져 더욱 건강위험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함.
- 결국 폭염 민감 계층으로서 신체적응 능력이 낮고 만성질환이 있는 고령층, 기저질환자에게 적합한 정보 제공이 되어야 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현장종사자, 의료인의 폭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함을 주장함. 또한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보건 당국의 역할 강화, 민감 계층의 이슈를 지속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건강 모니터링 전략을 구체화 할 것을 요구함.

나. 채여라 외의 연구

○ 채여라 외(2019)도 폭염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동일한 기온 기준에서도 연령, 성별, 소득, 직업, 거주환경에 따라 폭염의 영향이 달리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야외 근로자의 경우 그 영향은 명확하다고 하고 있음. 설문 결과 야외근로자는 주로 농림어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순이고, 이들은 업무 효율이 30~70%가 감소했다고 보고하였음.

○ 구체적으로 건설업의 경우 폭염에 따른 평균 업무 효율 저하율이 43%라고 하였고, 체감온도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뼈대로 사용되는 H 빔은 폭염시 온도가 78°C 까지 올라가며 알루미늄 거푸집은 철보다 열전도율이 높아 쉽게 달구어져 안전화 밀창

고무가 녹아 바닥에 달라붙기도 한다는 것임.

-또한 지하 4층의 깊이에서는 온도가 40°C를 넘기도 하며, 이런 환경에서 용접, 형틀, 조공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함. 현장에서는 고온으로 인한 신체영향을 줄이기 위해 얼음 조각에 아이스 팩을 넣고, 어깨에 쿨 타월, 안전모 안에 얼음 팩을 넣는데 피부에 닿으면 쿨 타월은 따갑고, 얼음 팩은 한 시간이면 녹으며, 물과 이온 음료를 하루에 3L 씩 마셔도 오후가 되면 탈진 증세가 발생한다고 함.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서 폭염무더위 시간대에 옥외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으나, 지연 되어 약속한 공사기간에 못 맞추는 경우 지체 보상금을 물어야 하고, 임금을 주지 않으며 반대하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지키기에 한계가 있음

○이동근로자인 가스검침원의 경우 계속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을 챙겨다니려면 물 무게가 부담이 되며, 은행이나 편의점에서 더위를 피하려 해도 관리구역으로 다시 돌아가기에 부담이 된다고 하고 있음.

-가스검침원은 담당 가구를 제시간에 끝내야 하므로 폭염경비 시에도 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음

○인터넷 설치 기사는 폭염경보가 발령되어도 고객 방문 일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없으며, 업무를 하며 사다리를 타고 전봇대 위로 올라가 회선을 연결하거나 계단을 수차례 오르내려야 하므로 폭염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음. 시간 단 10~15분씩 휴식 시간을 갖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하라고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이행 지침은 적용되지 않고 있음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라 폭염시 작업중지나 냉방시설 개선을 요구할 사업주가 없음. 택배 위탁 배달원은 다른 배달원이 쉬는 경우 물량을 떠맡는 구조라 폭염이라고 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음식배달 기사는 폭염시 1.5배 배달량이 늘고 배달 대행업체들이 강제 배차를 하거나 배정수 제한, 초지연, 관리자오더 조절 등을 하고 있어 폭염 시 대응할 수 없다고 말함

- 또한 방송스태프 들도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팀단위로 용역계약을 해서 진행하므

로 촬영에 들어가면 동시 녹음 때문에 야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에어컨과 선풍기를
 끄고 있어 어려움

- 방문요양 보호사 역시 환경이 열악한 집을 배정 받는 경우 에어컨을 틀지 않고 그
 림에도 추가 지원은 없기 때문에 선풍기 트는 것도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운
 것으로 확인됨

○ 이들은 다양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직종별로 노출온도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 필
 요함을 제기함

〈표13〉 직업별 폭염관련 대안

직업	요청사항
농업	-산재보험 또는 민간보험 제도 개선 필요
배달대행/택배	-폭염 폭우시 안전 배달료 도입 필요 -분류 작업장 냉방시설 확충
건설업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지 법제화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지 해도 일정 임금 보장
인터넷 설치 기사/ 가스 검침원	-인력확충을 위한 폭염 시 담당지역 축소 -실효성 있는 쉼터 필요
사회 복지사/요양보호사	-환경이 열악한 집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

자료: 채여라 외(2019)

-특히 택배 및 배달업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고온에 노출되는 빈도가 많았고, 건설업
 의 경우 특정 작업 시 매우 높은 고온에 노출되고 있으며, 농업은 재배 작물에 따라
 노출온도 특성이 다르고 노출온도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함. 결국 건설 현장, 방
 송 현장 등의 경우 폭염 시기를 고려한 공사기한 조정과 임금 보전 등의 대책이 필
 요하며, 이동노동자(가스검침원, 배달노동자 등)을 위한 접근 성 있는 쉼터 제공이 필
 요함을 제기함

라. 신새미외의 연구

○ 신새미외(2022)는 폭염·한파 건강장해 예방조치 개선방안을 연구하면서 한국의 폭

염관련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대한 검토를 위해 취약 사업장 업종을 선전하고 작업장 온도 지수 및 관리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적 규정의 개정안을 검토 하였음

- 한국을 포함하여 해외 OECD 또는 EU에 가입한 31개국의 폭염 및 한파 등의 건강장해 예방조치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강제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24개국, 온도기준을 포함한 국가는 16개국이 있으며, 한국 실정과 유사한 독일의 실내 열관리 가이드라인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음.
- 독일의 경우 사업장 안전보건시행령을 통해 사업장의 온열환경을 규율하고 사업장의 기술적 규칙의 형태로 해당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고 있음. 온도기준을 살펴보면, 최저 온도는 12°C, 최고 온도 26°C로 되어 있고 온도별 습도 범위 기준과 관리조치 등을 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되는 것으로 확인됨. 구체적으로 외부온도가 26°C 이상이고 작업장 기온이 26°C이상이면 직사광성의 작업장 유입을 차단하는 보호 설비를 하도록 하고, 조직적으로는 작업 중지와 냉방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30°C 이상인 상황에서는 △작업을 마친 후에도 블라인드를 닫은 상태로 두는 등 일광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것 △야간에도 냉방기를 가동하는 등 환기설비의 효과적인 운영 △ 발열전 기장치의 가동 최소화 등 실내 열감소조치 △시무 전 환기 △근무시간을 변경 가능한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의복 규정 완화 △시원하고 깨끗한 음료 제공을 하도록 예시하고 있음. 작업장에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온도는 35°C이고 이때에는 작업장에 온도를 제어하는 조치로 에어 샤워, 워터베일, 조직적으로 방열단계, 열 보호복을 예시로 규정하고 다만 이 조치들은 예시적이며, 어떤 조치를 취할 지는 사용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 법에 직접 특정 유해 인자 혹은 그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한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온열환경에 대한 의무조항을 통해 작업장 실내온도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저자들은 폭염관련 사업장의 온열환경을 조사하면서 현행 폭염 및 한파 관련 규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해외 사례로부터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 안전보건 규칙에 ‘고열’을 인위적인 열에 의한 것으로 ‘고열작업’, ‘한랭작업’, ‘다습작업’을 위주로 작성되어 폭염이나 한파에 의한 기후적인 요인에 의한 열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해당 내용을 별도로 다루거나 아니면 ‘고열’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

- 또한 2017년 이후 「안전보건 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폭염옥외노출에 관련하여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들어갔으나 실내의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고, 유해요인 및 다양한 관리방법이 제안되어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내에 개별규정으로 흩어져 있거나 규정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 많아 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함.

마. 전국건설노조의 실태조사

○ 전국건설노조에서는 2023년 7월~8월 보도자료를 통해 폭염기에 정부의 대책에 대한 비판을 하였음.

- 폭염기 건설현장의 2023년 8월 형틀 목수, 철근, 타설 등 토목건축 현장 노동자 3,20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시간 일하는 경우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쉬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폭염이어도 별도 중단없이 일하고 있다’는 응답이 81.7%로 2022년에 진행한 설문결과에서 동일한 질문에 58.5%로 응답한 비중보다 훨씬 더 증가하였음.

-2022년 7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건설현장 300곳에 온습도계를 배포하여 130곳의 현장에서 622건의 체감온도를 기록하였던바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온도와 평균 4°C정도 차이가 났다고 보고하고 있음

- 실제로 충청북도 LH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외부 온도가 32.3°C, 습도가 54% 였을 때 현장에서 측정한 온도는 48.3°C, 습도는 87%로 체감온도가 52°C 였다고 말함 (보도자료, 2023. 8.9)

-2022년 설문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동료가 구토나 메스꺼움 급기야 실신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런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2.4% 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최근 3년간 몇 회 정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1~3차례’라는 응답이 29.3%였으며, ‘폭염기에 매일 본다’는 응답도 9.2%, ‘10차례 이상’이 6.0%, ‘7~9차례’가 3.0%, ‘4~6’차례가 11.5%로 확인되었음. 또한 ‘폭염관련 정부대책이 건



[그림6] 공사현장 실측 온도 (건설노조 보도자료, 2023.8.9.)

설현장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중복 선택하도록 한 결과 '강제성이 없어 건설현장에 있으나 마나임'이라는 응답이 53.2%, '정부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이 46.3%, '물량도급 관행으로 쉬는 시간 없이 일하는 건설현장 관행'이 29.5%, '최저가 낙찰제 등으로 폭염 등으로 인한 공기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응답이 26.7%로 확인됨

-또한 건설노조에서는 2023년 공공공사 건설현장의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여 발표를 하였음. 해당 발표에 따르면 전국 14곳의 공공현장에서 편의시설을 검토한 결과 휴게실이 아예 없는 곳이 7%이고, 탈의실도 없는 곳이 50%, 화장실이 없는 곳이 14%였음. 하물며 폭염 기에 화장실에 냉방시설로 '에어컨이 있는' 곳은 22%, '선풍기가 있는' 곳은 7%에 불과하며 '없는 곳'이 무려 71%이었으며, 휴게실에 냉방시설로서 '에어컨이 있는' 곳은 50% 이고 '선풍기가 있는' 곳은 29%, '없다'는 응답이 21%였음. 따라서 폭염 기에 건설현장의 실태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보도 자료로 배포하고 문제제기하였음

III. 실태조사 결과



Ⅲ. 실태조사 결과

1. 실태조사 개요

○ 실태조사 인터뷰는 배달 라이더 4명과 건설노동자 4명, 도시가스점검원 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인터뷰대상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도시가스점검원을 제외하고 모두 남성이었으며, 연령대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40대에서 60대였음.

-근무경력은 건설노동자의 경우 다소 근무 경력이 짧은 편이나 배달 라이더는 다양하게 나타났고, 도시가스점검원은 근무 경력이 5년 이상 임

- 배달라이더와 도시가스점검원은 은평 지역과 서대문 지역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었으나 건설 노동자는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에 따라 경기도, 서울 동부 및 은평 지역에서 진행되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남

〈표14〉 인터뷰 대상자의 개요

구분	특징	인터뷰 일시	인터뷰 장소	
라이더	A	남성, 만 53세, 근무경력 18년	2023.10. 16	은평 상상 회의실
	B	남성, 만 43세, 근무경력 20년		
	C	남성, 만 45세, 근무경력 3년		
	D	남성, 만 61세, 근무경력 7년		
건설	A	남성, 만 56세, 근무경력 2년	2023.10. 22	은평구노동자종합복지센터
	B	남성, 50대, 건설노조간부	2023.10. 31 오후1시	건설노조사무실
	C	남성, 40대, 근무경력 5년	2023.11. 6	건설노조 경기북부건설지부사무실
	D	남성, 40대, 근무경력 5년	2023.11.18	은평 상상 흐름방
도시가 스점검 원	A	여성, 40대, 근무경력 6년	2023.11.17	은평 상상 회의실
	B	여성, 50대, 근무경력 18년	2023.11.17	은평상상 회의실

○ 인터뷰 내용은 응답자 특성과 더불어 각 사업장에서의 근무 조건에 대한 검토, 그리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 폭염관련 실태, 개선방향임

- 응답자 특성은 해당 인터뷰 대상자들의 연령과, 성별, 근무 기간을 확인하였음
- 근무 조건과 관련된 부분은 해당 업무의 특성과, 평상시의 근무 시간 그리고 보수 수준에 대한 검토를 하였음
- 사업장 안전 보건 관련 내용은 평상시 업무를 하면서 라이더나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조치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지, 안전 장비들은 잘 지급되고 있는 지, 교육은 어떻게 하는 지를 확인하였음
- 폭염관련 부분은 해당 인터뷰 대상자들의 폭염관련 정보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3대 수칙으로 물, 그늘 막, 휴식관련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 온열질환 자각 증상 점검표 등을 알고 있는 지, 또는 체크해본 경험은 있는 지, 온열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보냉 장구는 지급되는지, 기타 사업장에서 폭염관련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 마지막으로 개선 방향은 각 업종별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요청하고 싶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검토하였음

〈표15〉 인터뷰 내용

구분	세부내용
응답자 특성	연령, 성별, 근무 기간
근무조건	업무 특징, 근무 시간, 보수 수준 등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현황, 작업중지권실시 현황, 교육 등
폭염관련 실태	폭염관련 정보 인지 정도, 코샤 가이드에 기초한 사업장내 대책 현황, 물.그늘막.휴식 관련, 온열질환 자각증상점검표, 보냉 장구(아이스조끼, 아이스팩 지급 등)
개선방향	폭염관련 정부 대책에 대한 개선 방향

2. 실태조사 결과

가. 건설노동자

1) 근무조건

○ 60개 직종을 가지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업무

- 건설노동자의 업무는 국가 직무능력표준 직종을 토대로 검토해보면 토공, 형틀목공, 미장, 방수, 석공, 도장, 철근, 비계, 콘크리트 등 60개 직종⁷⁾들이 존재함. 각각의 직종을 경력, 자격, 교육 훈련에 따라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되며 초급은 3년 이하, 중급은 3년 이상 ~9년 미만, 고급은 9년 이상 ~21년 미만, 특급은 21년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음(전기신문, 2021.5.11.)
- 건설노동자의 60개 직종 가운데 폭염에서 외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거나 비교적 많은 인원이 접근하는 직종이 형틀목공이나, 철근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직종이라고 함
- 또한 최근 5년간 건설업의 중대 재해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사망재해에 대한 검토를 해 본 결과 철골 구조물이 38.2%로 가장 많았고, 지붕 작업 34.5%, 고소 작업대 14.6%, 선 라이트 12.7%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음(문병두 외, 2021)
- 인터뷰 대상자들이 하고 있는 작업에서도 추락과 관련된 직종들이 존재하여 각종 발판, 기계설치 전에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계작

7) 건설근로자기능 등급제 60개 통합직종

연번	직종	연번	직종	연번	직종	연번	직종
1	토공	16	도장	31	건축배관	46	플랜트제관
2	포장	17	철근	32	보일러	47	덕트
3	궤도	18	콘크리트	33	상하수도 배관	48	플랜트덕트
4	보링	19	창호	34	플랜트기계설비	49	일반용접
5	준설	20	비계	35	플랜트전기설비	50	(일반)특수용접
6	측량	21	판넬조립	36	플랜트계측설비	51	플랜트용접
7	형틀목공	22	도배	37	플랜트배관	52	플랜트특수용접
8	건축목공	23	유리	38	조경	53	송변전
9	조적	24	수장	39	별목부	54	배전
10	미장	25	보온	40	건설기계	55	내선전기공사
11	건출	26	플랜트보온	41	일반기계	56	외선전기공사
12	방수	27	지붕	42	잠수	57	철도신호제어
13	코킹	28	철거	43	문화재시공	58	정보통신
14	타일	29	강구조	44	일반기계설비	59	발파
15	석공	30	건축기계설비	45	제관	60	안전관리

업이 있었고, 건물을 세우기 위한 땅을 파고 형틀 목공을 하는 직종, 그리고 철근 공, 배관 및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 이들이 하는 작업은 주로 팀을 구성하여 일을 하게 되며, 직종에 따라 5~6명 정도가 되기도 하지만 한꺼번에 20~30명 또는 수 백 명이 투입되어 일을 하기도 함.
- 철근 작업의 경우에는 중량이 많이 나가서 무게에 따라 1명 또는 2명이상이 팀을 이루어 운반작업과 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특히 콘크리트 작업의 경우 레미콘 기계가 들어오게 되면 개별적으로 작업을 관리하기 어려우며 작업흐름에 기초해서 진행되게 됨.

“저는 비계작업을 하고 있어요. 비계작업은 건설 각종 위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이나 기계설치 하기 전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드는 작업을 말해요.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그걸 철거하기도 합니다. 비계는 기공, 중 기공, 조공으로 구성되어서 보통 한 팀에 6명인데 많을 때는 15명 정도가 같이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건설 A)

“저는 철근을 주로 하고 있는 데 주로 60대 형님들이 많이 하시고 계시고 5m 짜리는 주로 혼자 나르고, 그 이상은 짝을 지어서 둘이 매고 나릅니다.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거나 하지는 않고 층이 올라갈 때 마다 지고 나르고 고정하고 하는 작업을 하나 까 안전통로를 통해 운반을 합니다.”(건설 D)

“저는 형틀목공으로 1년 정도 일했고, 배관공으로 4년 정도 일했어요.”(건설 C)

“형틀이나 철근 공은 혼자서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페이스 조절이 가능해요. 그런데 레미콘이 들어오고 펌프카가 있어서 여기에 레미콘을 부어 주면 펌프카 배관 라인 따라 흘러들어가다가 배관 마지막에 타설공이 6명에서 8명이 팀으로 붙어서 계속 일을 해야 해요. 그래서 자기 페이스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레미콘 차가 움직이면 그게 다 돈이니까 쉴 시간이 없어요.”(건설 C)

○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업무 특성

- 건설노동자의 고용은 대체로 거주지 주변의 직업소개소를 거치거나 팀·반장을 통한

인맥으로 고용되며 계속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싶지만 고용이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업무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신태중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직업소개소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비중이 52.3%이고 인맥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는 18.3%로 비교적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인터뷰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인맥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으며, 노동조합을 통해 확보되는 경우가 상당비중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외국인들도 상당수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일당이 싸서 건설현장에서 많이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원래 저는 다른 사업을 하다가 비계교육을 받고 팀장을 따라 다니며 지금은 비계를 주로 하고 있어요.”(건설 A)

“건설은 직업소개소를 거치게 되면 수수료를 내야 하니까 건설노조를 통해서 건설현장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저도 노조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노조가 방어막이 많이 되어 주었어요.”(건설 C)

“저희 현장에서는 한국인 외에 외국인이 많아요. 그 분들은 아무래도 일당이 싼편이라 소개소 통해 들어오는 것 같고, 저희는 노조를 통해 들어가고 같은 공정을 하지는 않는데 대신에 외국인이 제대로 일하지 못한 부분에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들어가서 수정작업을 하기도 합니다”(건설 D)

○ 근무시간 관련

-폭염과 관련하여 근무시간의 조정이 문제제기 되고 있으므로 인터뷰 대상자들의 근무시간을 확인 해 본 결과, 직종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대체로 오전 7~8시 사이에 시작해서 오전 11시 정도에 오전 작업을 마무리 하고 2시간 정도 점심시간을 가진 뒤 오후 5시 정도에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됨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단체협약에 따라 오전, 오후 ‘참’이 있어서 30분 씩 휴식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오전은 9시부터 9시 반까지, 오후는 3시부터 3시반 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때로는

작업이 마무리 되게 되면 근무시간 관계없이 일찍 마무리하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건설은 폭염, 한파에 작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음

“일반적으로 현장 분위기는 한 번 일을 시작하면 쭉 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일하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오전 7시에 시작해서 보통 5시에 마무리 하고 중간에 2시간 정도 점심시간이 있어요. 오전 오후 참이 있어서 30분씩 쉬기도 해요. 오전 참은 9시부터 9시 반 오후 참은 3시에서 3시 반 이고요, 노조에서 이야기해서 생긴 제도예요.”
(건설 C)

“일은 여름에는 조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대체로 오전 5시, 6시에 시작해서 오후 2시면 다 끝나요.”(건설 B)

“일은 보통 아침 8시에 시작해서 11시 까지 하고 2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쉬어요. 그리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일을 하고 30분 쉬었다가 오후 5시까지 일하고 퇴근해요. 5시에서 7시 까지 늦어지면 공수를 절반 정도 추가해줘요.”(건설 A)

○ 일당제로 운영되는 임금

-건설노동자들은 대체로 하루 일당제로 운영되며, 해당 기능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등급에 따라 임금 수준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음. 신태중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의 건설노동자는 연간 평균 근로일수가 210일이고 연간 평균 소득은 약 2,400만 원 정도로 보고하고 있으나,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건설업 평균임금실태는 26만5천원이고 보통 인부의 경우 161,858원으로, 형틀목공은 274,955원, 철근공은 261,936원, 배관공은 224,209원, 비계공은 281,721원으로 보고하고 있음. 해당 임금은 해당 직종의 등급을 모두 합쳐서 평균 금액으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됨(대한 건설협회, 2023)

- 인터뷰 대상자들이 말하는 임금은 평균 15만 원 정도 인 것으로 확인됨. 각 기능 등급의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초보자의 경우 15만 원 이하인 경우도 있고, 경력이 쌓이게 되면 점차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되며, 상술한 근무시간외에 추가 근무를 할

경우 추가적으로 임금을 더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비계공 일당은 조공 기준으로 하루 15만원에서 20만 원정도 하고 있어요. 장비는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가야 하고요”(건설 A)

“현장에는 대체로 기공, 준기공, 조공이 있는데, 초보는 조공이라 하고 대략 14만원에서 16만 5천 원 정도 조공 임금이 책정되어요.”(건설 C)

“저는 기공이라 일당 약 26만 정도 받아요. 보통 양성공들은 18~19만원 정도 받고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팀장이나 준기공은 23만원 정도 되고요. 철근 공은 아무래도 힘을 써야 하고 들고 날라야 하니까 좀더 비싼 거 같아요”(건설 D)


2)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잘 지급되지 않는 안전대

-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현장에는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할 내용이 매뉴얼로 대부분 존재하고 있음. 기본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내용 외에, 작업장 순회 점검, 안전보건 교육 실시, 발파 등을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 방법훈련, 안전보건정보 제공 등의 기본적인 사항 외에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함. 또한 안전난간, 울타리 및 덮개 설치, 작업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사항

사업주



- ①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조치
- ② 작업발판 및 개구부 등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및 덮개 설치
- ③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등 설치
- ④ 지반의 굴착장소 등에는 안전기울기 유지, 흙막이 지보공 등 설치
- ⑤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실시 및 조립도에 따라 조립
- ⑥ 건설현장에 신규 채용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12.7.1.부터)
- ⑦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목적(근로자 안전보건 확보)에 맞게 집행
- ⑧ 공사규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선임, 업무수행 및 관련 서류 비치

[그림7]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사항 (안전보건공단, 2022)

- 또한 이에 따라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되어 있고 급박한 위험 상황 시 작업중지권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인터뷰 결과 해당 안전조치의 내용들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인터뷰 결과 건설 노동자들은 안전대가 잘 지급되지 않으며, 작업중지권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비계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설비를 해체하는 경우 안전대가 없으면 추락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건설비계공들은 사비를 들여 본인들의 안전대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안전모와 안전화는 지급하는데 안전대 같은 경우는 직종별로 좀 다르기는 해요. 비계는 워낙 추락사고가 있을 수 있어서 본인 장비들을 가지고 다니는데, 형틀목공이나 배관은 큰 공사 현장은 지급해 주는데, 보통 작은 곳은 잘 안주죠.”(건설 C)

“안전화와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안전화와 안전모만 지급하고 안전대는 잘 지급하지 않아요.”(건설 B)

“비계작업 중에 해체를 할 경우에 안전모를 썼다고 하더라도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파

이프나 낙하물에 어깨가 찍히기도 하고 생명줄을 매고 하는데 그게 클립이 있어서 이 동 시에 굉장히 위험합니다.”(건설 A)

○ 사용하기 어려운 작업중지권

- 「산업안전보건법」 제 52조에 따르면 근로자들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는 매우 어려움. 건설공의 고용특성상 일용직이 대부분이고 공사 일정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실업상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늘 고용이 불안한 건설노동자의 입장에서 작업중지를 선언하게 되면 다음의 고용을 보장 받지 못하여 전혀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임
- 그나마 법적으로 작업중지권이 행사되는 경우 임금은 지급되며, 최근에는 전면 작업 중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 작업 중지가 진행된다고 함. 문제가 발생한 해당 공정에 대해 보완하거나 중지하고 나머지 공정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함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하도록 개정되어서 법적으로 가능한데 현실에서는 그걸 행사 하면 나중에 집에 가서 쉬시고 내일부터 푹 쉬세요 한다는 거죠. 다만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해도 임금은 나와요. 그렇지만 고용이 계속되지를 않은 거죠.”(건설 B)

“작업중지권이 법에 있지만 그걸 제가 일하는 동안 행사하는 건 본적이 없어요. 건설공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면 그다음 일에서 고용을 안 해 주니까 그걸 할 수가 없죠. 우리 직종이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직종이라 특성상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건설 C)

“요즘에는 저희가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전화로 연락을 해요. 그러면 안전조치 하는 분이 와서 확인하고 필요하면 작업을 중지하면 다른 일을 하도록 하고 시정이 되면 일을 계속하고 그런식이에요. 저희끼리 직접 작업중지를 하지는 않아요.”(건설 D)

○ 사용하기 어려운 휴식시간의 운영

- 휴식시간이라고 부여되고 있는 시간은 사실상 현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활용하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됨. 특히 높은 위치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경우 오르내리는 동안 그 시간은 다 지나갈 정도로 짧아 다분히 형식적인 배려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음

“저희는 40분 일 하고 10분 쉬라고 하는데 그게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경우 다시 내려오기가 기계사이로 움직여야 하고 연장도 가지고 있어서 쉬는 시간이 있어도 잘 안 내려와요.”(건설 A)

“건축물 오르내리지 않아도 화장실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보니 본의 아니게 위생개념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편이에요.”(건설 B)

○ 적절하지 않은 휴게 공간 및 편의 시설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옥외 사업장의 경우 작업장과 인접한 곳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여름철 더위에 대비하여 에어컨을 설치하여야 하고 음용 수 설치가 필요함.

-그러나 건설 현장의 경우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선풍기만 있고 에어컨이 없거나 혹은 작업장으로부터 먼 곳이라 해당 휴게시설을 다녀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그래서 노동자들은 차라리 철근 등으로 어느 정도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그대로 단열재 같은 것을 깔고 현장에서 그냥 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공사규모가 큰 곳에서는 그나마 법적 기준을 요식적으로도 지키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공사규모가 적은 곳에서는 휴게실은커녕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도 갖추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확인됨

“설 때는 철근 이런 작업이 진행 된 뒤에는 햇빛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그냥 쉬어요.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단열재 이런 게 있으면 깔고 쉬어요. 큰 업체는 휴게실용으로 천막 정도는 해주기도 해요. 그런데 공사규모가 적은 곳은 휴게실

은커녕 화장실도 없어서 예전에 흥대까지 뛰어 갔다 오곤 했어요.”(건설 C)

“휴게실에는 선풍기와 물을 가져다 놓는데 일하는 현장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폭염에 포도당을 비치해서 하나씩 그걸 주기도 해요.”(건설 A)

“대부분의 건설현장에 편의시설은커녕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을 구비하고 있지도 않아요. 휴게실은 3분 이내 거리에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요, 화장실도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건설 B)

“ 큰 공사장의 경우에는 휴게실이 있어요. 제대로된 휴게실은 너무 멀어서 가기가 어렵고요, 중간 중간에 간이 형태로 만든 휴게실이 있기는 한데요. 그냥 담배 피울수 있도록 해놓기는 해요. 그것도 요즘에 해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화장실이 제일 문제예요. 소변은 대충 처리 할 수 있도록 해 놓는데, 대변은 사실 설치를 좀 해두어야 하죠. ”(건설 D)

○불충분한 안전교육

- 건설현장의 안전교육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에 따라 공사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 담당자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공시작업자 등에게 매일 공사착수 전에 당일 작업의 공법 및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 순서, 시공 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건설 공사 시작 전 팀별로 주로 작업에 대한 확인과 업무 관련 주의 내용이 전파되는 것으로 확인됨. 대형건설사의 경우 해당 법률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는 것으로 확인되나 대부분 해당 공정이 팀별로 진행되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됨. 그리고 별도의 기능 등급을 위한 교육은 별도비용을 노동자가 사비로 지불하고 이수하는 것으로 확인됨

“저희 회사는 아침에 팀별로 일하기 전에 체조하고 작업에 대한 설명해주고 혹시 몸이 안 좋은 사람 있으면 휴게실에서 좀 쉬다가 일 시작하게끔 배려해줘요. 새벽부터 일하려고 나온 사람인데 일하지 못하게 하면 안되니까”(건설 A)

“비계공은 안전교육을 8시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데 교육비를 돈을 내고 받으면 이 수증을 줘요. 그건 평생 한번 받으면 되는 거고, 4시간교육은 입사할 때 받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교육을 받아요.”(건설 A)

3) 사업장의 폭염관련 대책

○ 폭염관련 물을 제외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그늘막과 휴식시간

- 산업안전법이나 시행령, 규칙 등에서 폭염관련 내용은 동 규칙 제 567조 제2항에 서만 언급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KOSHA GUIDE(H-219-2022)로 안내하고 있음.

-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최고 체감온도가 33°C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일 때 매 시간 10분 씩 쉴 수 있고 오후 2시~5시까지 작업을 단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최고 체감온도가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가 발령되면서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도록 하고 오후 2시~5시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고 체감온도가 36°C 이상이거나 폭염경보 발령시에는 옥외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인터뷰에 따르면 해당 내용이 명확하게 현장에 전달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만 물과 얼음, 포도당 등이 제공된 것으로 보이지만 휴게실에 에어컨이 가동되는 경우도 많지 않고 설사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작업 중에 가서 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게다가 직종별로 작업을 하면서 음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그나마 지하 작업을 할 경우 제빙기를 구비하여 이걸 설치하고 노동자들이 활용하기도 하고, 고공 작업을 할 경우에는 물이나 제빙기를 들고 올라올 수 있는 곳은 가지고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물을 가져 갈 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물을 가지고 올라가지도 않아요. 장비가 많은 데 물을 가지고 가면 잘못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건설 A)

“물은 땅 밑으로 3층까지 파고 들어간 경우에는 제빙실을 마련해서 얼음도 만들고, 식염정도 받아서 물이랑 같이 먹고.”(건설 C)

○ 기상청 체감온도보다 훨씬 높은 현장의 체감온도

-건설노동자의 경우 폭염에 달구어진 재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하고 있음. 형틀 목공의 경우 거푸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기도 하며, 철근 공은 공사현장에서 철근을 운반해야 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폭염에는 철근의 온도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 있고, 이것을 어깨에 지고 날라야 하므로 문제가 되며, 타설 역시 콘크리트 수화열을 직접 받는 관계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온도보다 훨씬 높은 온도를 체감하게 되어 힘들게 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지고 있음

“형틀 목공의 경우 만지는 것이 콘크리트를 붓기 위한 거푸집을 만지는 데 그게 프레임은 철로 되어 있고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한여름에 햇빛을 받으면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요. 타설도 콘크리트가 레미콘에서 펌프카로 타설이 되면 뜨끈뜨끈 한 상태로 오거든요. 그 자체로 더운데 콘크리트에 장화신고 들어가서 일을 하면 위에서 햇볕이 내리쬐고 콘크리트 수화열을 같이 받아야 하는 거예요.”(건설 B)

“철근을 다루다 보니 여름에 철근이 데워져서 어깨에 철근을 여러 다발로 묶어서 어깨에 얹고 이동하는데 이게 60도가 넘어서 화상을 많이 입어요. 그래서 수건을 받치고 해요.”(건설 D)

“사업장이 폭염관련 정부 대책을 알기는 알아요. 자료도 부치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다른 나라 말로 번역도 해 놓고, 그런데 현실은 체감온도가 38도이상일 때라고 하고 있고, 1시간에 45분 일하고 15분 이상 그늘에서 휴식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층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휴게소가 1층에 있어도 다녀 올수가 없어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거죠.”(건설 B)

“아이스조끼나 햇빛을 가리는 모자 등이 제공된 적이 거의 없어요. 아이스 조끼 이런 거는 10만원이 넘는데 그런 걸 제공하지 않죠. 안전모도 냉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비싸서 그런 걸 제공하지 않죠.”(건설 B)

“아이스조끼는 일시적이라 고열 상태에서 오래 일하는 건설노동자에게는 별로 맞지 않아요. 차라리 선풍기조끼를 개별적으로 사서 입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쿨 스카프 이런 것은 정말 별로여서 거의 안 씁니다.”(건설 D)

○건설노동자가 모르는 자가점검진단표

-인터뷰에 응했던 건설노동자는 전부 자가점검진단표를 모르고 있었음. 정부에서 온 열자가진단점검표나 자각증상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표를 개발하였으나 현장에 전달되지 않고 있었으며, 점검표로 사전에 진단을 한다고 해도 일용으로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입장에서 일을 멈추고 쉬기는 쉽지 않은 현실임.

-특히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루어지는 안전교육이나 한 달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안전교육 시간에 폭염관련 언급이 있으나 이는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점검표나 진단표가 설명되거나 나눠 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온열자가진단 점검표 같은 것은 본적이 없습니다. 이 문항도 비현실적인 것이 문항이 2개 이상 해당되면 일을 안 하나고요. 이 건 사회구조적인 걸 이해하지 않고 그냥 쉬라고만 얘기하는 건 정말 비 현실적이죠”(건설 B)

“사업장에서 온열 자가진단 점검표는 본적이 없어요. 현장에서 볼 일도 없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안전 교육을 해요. 원래는 분기당 6시간이라 한 달에 2시간씩 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막상 그렇게 안 해요. 폭염 관련하여 안전 교육시간에 언급한 적은 있어요.”(건설 C)

○ 열사병에 속수무책인 건설노동자

-2023년 폭염에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사례가 확인됨. 인터뷰 대상자들은 올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직접 목격했던 사례를 이야기하였고, 그런 사

례가 쉽게 확인되는 것을 보면 현장에서는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경우에 일부 작업이 중지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일시적이며, 다른 작업에 투입되거나 바로 작업현장에 별다른 대책 없이 복귀해서 일을 하는 현실인 것으로 확인됨

“올해도 열사병 때문에 한 4분 정도 있었는데, 쓰러지면 무조건 119 부르고 작업은 계속해요. 그 해당 팀만 작업이 중지되는 부분 작업 중지되고 현장은 계속 일해요”(건설 C)

“이번 여름에 폭염주의보가 있었고 33도가 넘었는데 철근 일하시던 한 분이 열사병으로 쓰러져서 결국 뇌출혈이 일어나서 지금 일을 못하세요.”(건설 C)

“저희 일하는 현장에서 폭염에 외국인이 쓰러진 거예요. 점심 먹으러 가다가 식당 앞에서 쓰러져서 응급조치하고 119에 실려 갔어요. 그래서 어지럽다고 하면 가서 잠깐 쉬라고 하고 그래요.”(건설 D)

4) 개선 방향

○ 현장가까이에 설치 가능한 휴게실(그늘막)과 화장실

-건설노동자들은 현장 가까이에 폭염을 피할 수 있는 휴게실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휴게실에 냉방장치가 되어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강한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면 훨씬 효율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특히 휴게실 외에 보다 많은 간이 화장실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의외로 화장실이 많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바깥에 쉴 공간이 없으니까 진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컨테이너 갖다놓고 에어컨 켜 놓는다는데 현장 가까이 있어야 하고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건설 A)

“고용노동부의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는 알고 있어요. 당연히 안 하는 것 보다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핵심은 못 건드리는 거죠. 제대로 된 휴게실을 설치해서 잘 쉬도록 하고 일을 하거나 혹은 공사가 늦게 되면 보상을 해주거나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아닐까요?”(건설 B)

“먼지 날리는 그늘막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15분 시간을 맞추려면 3층마다 휴게실이나 그늘막이 있어야 한다는 거구요. 그렇지 않으면 작업특성을 고려해서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거나 최소 1시간에 20분은 쉬게 해야 해요.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건설 B)

“화장실은 정말 좀 필요해요. 그래도 건설노조 덕분에 과거보다는 간이 화장실이 늘기는 했지만 지금도 많지는 않아서 매우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 지는 거죠.”(건설 D)

○ 온도에 따른 작업중지권 실질적 행사를 위한 건설노동자의 고용 보호

- 작업중지를 하게 되면 공사가 늦어지므로 사실상 부분 중지가 이루어지는 현실임. 일부 건설사의 경우 안전모에 온도 센서를 부착하여 공사 현장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확인 후 정부의 기온 발표와 관계 없이 자체적으로 작업을 일시 중지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었음. 이러한 형태를 모든 건설 현장에 적용한다면 폭염에 온열질환 발생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안전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작업중지를 일부 하게 되고 또는 노조가 현실을 보고하면서 작업중지를 제안하거나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따라서 법안에서는 작업중지를 선언하는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조치가 필요함

“작업중지를 하게 되면 공사가 늦어지고 건설업체는 비용이 더 드니까 이걸 기재부에서 보완을 해주겠다고 하는 건데 이제 현 정부에서는 바뀔 수도 있을 거 같아요.”(건설 B)

“돈이 많은 건설사는 온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도록 하는 안전모를 지급한 적이 있어요. 온도가 35도, 40도, 45도 이렇게 올라가면 열을 받으면 받을수록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깔에 따라 쉬어라 라고 하는 지침이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모자를 지급하지 않아요.”(건설 D)

○ 고열작업에 폭염도 확대 적용

- 건설 노조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에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설명하고 있는 고열작업의 예시에 폭염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 고열작업에 대하여 폭염도 포함되는 경우 실내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현재 폭염관련 각종 가이드 외에 별도의 사업장의 조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훨씬 현장에 실효성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음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에서 고열 작업에 폭염을 적용해주었으면 좋겠어요.”(건설 B)

“이번 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저희는 작업하는 공간이 기계실이라 배관이 있고 해서 열이 굉장히 많이 나요. 안전모를 쓰고 보안경을 쓰고 있는 데 밑에서 열이 올라오면 앞을 볼 수가 없어요.”(건설 A)

나. 배달 라이더

1) 근무조건

○여전한 장시간 노동

- 배달 라이더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업 배달 라이더의 경우 주당 평균 57시간을 일하며, 월평균 24일 이상 일하는 것으로 확인됨(민순홍, 2023)
- 이러한 최근 연구 결과는 은평구에서 2020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동 실태조사에서는 라이더는 평균 주 6일을 일하고, 평일에 하루 9시간을 일하는 많아(이원희, 2020) 코로나가 풀린 2023년도에도 배달 라이더의 근무조건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인터뷰를 하였던 배달 라이더들 역시 동일한 결과를 보여 주어서 하루 9~10시간 정도 일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대체로 배달 수요가 많은 점심시간을 일하고 오후 3시~5시정도까지 휴식을 취한 뒤에 저녁 배달 수요와 밤에 있는 수요를 소화하고 퇴근하는 것으로 확인됨. 일부 인터뷰 대상자는 무려 하루에 16시간을 소화하는 경우도 확인되어 여전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저는 10시에 나와서 오후 2시 반이나 3시 정도까지 하고 점심을 먹고 좀 쉬었다가 오후 5시나 5시 반 정도부터 일을 해서 밤 9시나 10시정도까지 합니다.”(라이더 A)

“저는 하루에 16시간 정도 합니다. 아침에 6시에 나올때도 있고, 8시에 나올 때도 있고, 밤 11시나 12시 정도 까지 합니다. 잠자는 거 빼고 계속하는 거죠”(라이더 C)

“점심은 보통 집에 들어가서 먹기도 하지만 집에서 멀 때는 보통 한식부페나 김밥가게 등 라이더들이 가는 데가 싸고 양 많은 곳으로 정해져 있어요.”

○월 평균 250만원 정도하는 소득

- 코로나시기에 배달 라이더의 수입은 약 272만 원 정도로 조사되었음(이원희, 2020). 그러나 2023년 실태조사의 결과는 이보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어 약 평균 256만원의 소득으로 보고되고 있음(민순홍, 2023).

-인터뷰의 결과도 평균적으로 20일 정도 일을 한다고 하면 200~300만원의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비오는 날은 다른 때보다 배달 수수료가 높아서 오히려 라이더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됨

“ 평일이나 주말이나에 따라 주문량이 다르고, 축구를 하거나 이러면 주문량이 폭주를 하거든요, 그래도 평균적으로 평일은 한 10~15만원 정도 하고요, 주말은 15~20만 원 정도 합니다.”(라이더 B)

“저는 평일에는 20만 원 정도 하고요, 주말에는 30~35 만원 까지 합니다.”(라이더 C)

“비오는 날은 더 많이 되니까 오히려 일을 합니다. 비오는 날은 거의 40만원 까지도 갑니다.”(라이더 D)

2)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 불충분한 안전교육

- 배달 라이더의 경우 라이더를 처음 시작할 때 2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최초 노무 제공시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안전 보건 관련 대책이 있는 지 확인 해 본 결과, 라이더를 시작할 때 안전교육이 실시되는 걸로 확인이 됨
- 추가적으로 B사의 경우 자연재해에 대한 오토바이 안전교육을 하루 6시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원이 거리가 워낙 멀어 차로 4시간 걸림.
- 교육 대상자는 하루의 요구되는 건수를 채운 경우에 해당되며, 교육수당으로 5만원이 지급되다가 지금은 그 것 마저 중단되면서 교육 대상자인 배달 라이더의 접근성과 동기유발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자연재해에 대한 오토바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원에 가서 해야 되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2시간 30분씩 걸리고 교육은 6시간 하거든요. 그러면 교육받으면 5만원이 나오더니 그것도 2분기부터는 안 나와요. 그러니 누가 가서 교육을 받겠어요”(라이더 D)

- 초기의 교육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안전교육으로 실시되며, 온라인 안전교육은 영상을 틀어놓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마저도 커넥터(오토바이를 이용하지 않는 배달)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이 의무가 아닌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B사는 교육도 라이더만 받고 커넥터는 교육도 없어요. 라이더는 교육을 받으면 나중에 보험료와 여행비 혜택을 받으니까 그래도 할 수 없이 교육을 받는 건데 그것도 의무 교육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그리고 교육도 일정 건수를 채워야 받을 수가 있어요. ” (라이더 B)

“K사는 공지로 플랫폼 앱 안에 알림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냥 영상 틀어놓고 있는 거죠. 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라이더 C)

○ 안전교육의 내용 중에 폭염 관련 내용은 아주 짧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고용노동부의 폭염관련 지침에 따라 KOSHA-GUIDE의 내용을 토대로 기본 지침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안전교육에는 폭염관련 교육 내용이 아주 짧게 나와요. 온열질환 알려주고 너무 더우면 그늘에 가서 쉬라고 하고 라이더와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죠”(라이더 A)

3) 사업장의 폭염관련 대책

○ 라이더의 폭염관련 대책은 사실상 가장 현실성 없는 것으로 확인됨. 실제로 2023년의 폭염으로 인해 라이더들은 작업을 중지하거나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음이 확인되었음.

-특히 라이더의 경우 도로 위에서 오토바이를 몰면서 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로부터 올라오는 열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으며, 햇볕 가림막이 없는 상태에서 버스나 트럭이 앞에 있는 경우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열기 때문에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폭염을 언제라고 하는지는 모르겠고, 지난여름은 정말 더웠어요. 유별나게 더워서 보통 여름이라고 쉬고 하지 않는데 이번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집에서 한 보름 쉬었어요.”(라이더 A)

“너무 더울 때는 커피숍에 가서 1시간 정도 쉬고 하거나 픽업하러 가서 헬멧 벗고 에어컨 앞에 서있거나 합니다. 그러면 픽업 하는 업체 사장님에 따라 물을 주시는 분도 있고,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라이더 C)

“올해 한번 어지럼증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 때 날씨가 폭염이었는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구름 위로 걷는 느낌이라고 할까, 약간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일을 하면 안되겠다 해서 마감한 적이 있어요.”(라이더 D)

“문제는 더울 때 본인이 자각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자각을 못한 채 그냥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문제죠”(라이더 A)

“라이더는 날씨도 덥지만 차에서 나오는 열기에 우리는 가림막이 없으니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버스나 트럭이 있으면 그 열기가 너무 심해서 신호등 밖으로 나가기 일쑤예요. 그러면 대부분 정지선 위반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더운데 버스 뒤에 있으면 그 뜨거운 열기가 더 심해요.”(라이더 A)

○일부 회사의 폭염수당 및 물 쿠폰 지급

- 폭염에 대한 배달업체의 사업장들은 휴게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혹은 잠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조치는 전혀 없으며, 문자와 물을 사먹을 수 있는 쿠폰 지급, 그리고 일부 업체에서는 폭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문자의 내용은 기본적인 주의 사항으로 잠시 작업을 쉬도록 하고 있으나 라이더의 입장에서 작업을 쉬는 경우 수입이 중단되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문제제기 함

-또한 일부 업체에서는 전국의 편의점에서 물을 사먹을 수 있는 쿠폰 (700원)을 지급하였고, 은평을 비롯한 일부 자치구에서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생수를 비치하고 이벤트로 지급된 적이 있음

- 폭염수당의 명목으로 일천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폭염수당은 서울시 3구에서 섭씨 32°C 가 넘어야 지급된다고 하는데 각 구마다 온도가 일정하지 않아 해당 판단은 업체에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수가 없다고 함. 특히 대다수의 업체에서는 해당 조치는 없었으며, 라이더들은 개별적으로 카페에 들어가 잠시 쉬거나, 아예 수입을 포기하고 쉬는 경우가 있었음

“폭염이 되면 업체에서도 문자로 연락이 와요. 기본적인 주의사항으로 너무 더울 때는 쉬라고 하는데 이게 쉬면 수입이 안되니까 설수가 없죠”(라이더 B)

“저의 더울 때는 매번 문자가 오는 거 같아요. 회사에서 더울 때는 서늘한데 가서 물을 마시고 쉬어라 이렇게 오는데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언제 서늘한 그늘에 가서 물을 마시고 있냐

고요”(라이더 A)

“날씨가 더우면 할증료가 붙어요. 폭염수당이라고. 오백원이 정해져 있고, 천원이었는 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덥다고 매번 주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판단해서 어쩌다 한번 씩 주는 거예요. 서울시 온도가 세 지역 이상 32도 이상 되고 하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별로 온도가 다르니까 회사가 임의대로 하는 거죠”(라이더 B)

“K사에서 더울 때 일주일에 한번 생수 쿠폰을 주었어요. 전국편의점에서 지리산 맑은 샘물 500ml 교환권을 보내 주는 거죠. 그러면 편의점 들어가서 주구장창 있어요.”(라이더 C)

○무용지물인 온열자가점검표와 자가진단점검표

- 정부에서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온열자가점검표나 자가진단점검표는 현장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음. 또한 내용 자체도 배달 라이더에게 맞지 않는 내용이며, 일하기 전에 음주를 하였다고 해서 일을 쉬는 경우 바로 수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본인의 신체적 조건을 대부분 고려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 만들어진 자가진단표는 예방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사업장에서 온열 자가점검이나 자가진단점검표 이런 걸 본적은 없습니다.”(라이더 A)

“자가진단표의 내용은 전혀 우리한테 맞지 않아요. 음주 한다고 일을 한하지 않거든요.”(라이더 C)

“온열질환 자각증상 점검표 이런 건 받아보거나 설명을 들어 본적이 없어요. 게다가 우리는 햇볕을 다 받고 다니니까 체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야외 근로자 용으로 좀 더 필요한 항목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라이더 B)

○도움이 안 되는 보냉장구

- 정부에서 옥외작업 시 폭염 대응을 위해 권장하고 있는 아이스 조끼나 아이스 팩

등의 보냉 장구는 배달 라이더에게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됨.

- 배달라이더들은 아이스 조끼가 얼음이 녹는 경우 교체를 해주어야 하나 교체를 해 줄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며, 무거워서 오히려 배달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며, 그나마 쿨 토시는 햇볕을 막아주어 도움이 일부 될 수 있다고 말함. 또한 안전모를 쓰고 배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햇볕에 뜨겁게 달구어진 헬멧을 쓰고 있어 두통과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함

-또한 휴게실이나 무더위 쉼터는 각 자치구에서 많이 설치하였다고 하나 배달라이더가 활용하기는 어려우며, 활용하고자 하더라도 주차공간이 없으면 오토바이를 둘 곳이 마땅하지 않아 이용하기 어려움이 확인됨

“쿨 키트나 쿨 스카프는 별로 큰 도움이 안되고요. 아이스 조끼도 얼음이 녹으면 교체를 해주어야 하잖아요. 무겁기도 하고요. 쿨 토시는 그나마 괜찮아요. 햇빛에 안타니까”(라이더 D)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는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요, 들은 적도 없고 기본 적도 없어요. 배달 노동자는 사실 무더위 쉼터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해요. 그리고 간다고 해도 그곳이 1층이어야 잠깐 이라도 들리지, 주차공간이 없으면 잠깐 가는 것도 힘들어요.”(라이더 D)

4) 개선 방향

○폭염수당에 대한 엇갈린 의견

- 라이더들은 폭염수당에 대한 의견은 나뉘는 것으로 확인됨.

-폭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폭염에 라이더로 하여금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더를 사각지대로 몰아가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음. 따라서 폭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설수 있도록 하면서 오히려 설수 있도록 하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 같은 형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기함. 실제로 라이더유니온은 기후 실업급여와 라이더를 위한 온열질환예방가이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⁸⁾

- 반면 배달 라이더는 어차피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쿨을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폭염수당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폭염수당을 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이더를 사각지대로 더 모는 거잖아요. 폭염수당을 안주고 설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차리리 불볕더위에서 일하는 라이더를 위해 쿨을 끊고 쉬게 하고 휴업 수당 같은 걸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이더 A)

“저는 폭염수당을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어차피 라이더는 쿨이 와도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잖아요. 설 수 있게 되면 별이가 줄어드는데 그것보다는 힘들면 자율적으로 쉬면되는 거고 폭염에도 내가 쿨을 받아 수행을 한다면 폭염수당을 주는 게 맞다고 봐요”(라이더 C)

○ 정기적인 생수와 식염포도당알약 지급이 필요

- 라이더들은 폭염에 보다 쉽게 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길 원하고 있었음. 물은 하루에 3-4병 정도는 있어야 하며, 물을 먹을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해주는 경우 정기적으로 최소 3일에 한 번 씩을 주어야 한다는 것임. 무료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경우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어 라이더들의 배달 시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로 진행되길 원하였음
- 또한 폭염에 물만 먹는 경우 자칫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생수 외에 식염 포도당 알약 등을 지급해 주거나 휴게실에 비치하여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함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는데 굉장히 힘들고 번거로워요. 물도 매일 챙겨 나오는데 한 두병도 아니고 보통 3~4병은 마시거든요”(라이더 A)

8) <https://zdneta.co.kr/view/?no=20230803135102> zdneta, 2023.8.3. 폭염속 해열제 먹으며 배달....“라이더 기후 실업급여 도입해야”

“동마다 주민센터에 물을 비치해서 내리지 않고 그냥 바로 집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아요”(라이더 A)

“생수하고 식염포도당 알약을 주면 좋겠어요. 폭염에 물만 먹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식염포도당은 지나친 땀 배출로 인한 탈수 증상을 막고 염분과 당을 보충해주는 거라 이런 걸 하나씩 주면 좋죠”(라이더 D)

○햇볕 가리개 등의 효용성 있는 물품지급

- 배달 라이더가 폭염에 가장 힘든 것은 폭염 외에 도로로부터 올라오는 복사열, 그리고 버스나 트럭으로부터 오는 열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그나마 햇볕이라도 가릴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함. 임시적일지라도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지급해준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언급함.

“오토바이 위에 햇빛 가리개를 설치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라이더 A)

다. 도시가스 검침원

1) 근무조건

○ 검침, 점검 송달업무를 하는 도시가스점검원

-도시가스점검원은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가스의 정확한 계량 검침과, 사용자의 시설을 점검하여 안전상태 여부를 체크하며 전입전출의 세대 확인과 고지서 송달업무를 하고 있음⁹⁾

-안전점검은 ‘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제36조 제2항의 2호에 의거하여 1년에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음. 검침은 매일 1회 형태로 진행되어야 함

9) 제36조 (시설 안전점검)

② 회사는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2. 회사가 실시해야 할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점검은 설치한 후 1년에 2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전체 업무 중 시설 점검업무가 전체업무의 67.5%로 가장 많고, 검침업무는 29.2%, 지로 발송 업무는 11.8%로 확인됨¹⁰⁾

“업무는 3가지예요. 점검, 검침, 송달이에요. 점검은 가스 안전 누출여부, 설치 상태를 확인하는 걸로 6개월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고, 검침은 사용량을 검침하고 가스비를 받으니까 한달에 한번 일어나고, 송달은 청구서를 송달하는 거예요”(도시가스점검원 B)

○ 여성근로자가 대부분인 도시가스점검원

- 현재 도시가스점검원은 전국 32개 도시가스사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고 전국 고객센터는 총 243개소에 달함. 수도권에만 136개소가 있으며, 이곳에 종사하는 도시가스점검원들은 2020년 3월 기준 4,571명 정도에 이르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 근로자 인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서울 지역은 현재 5개사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서울 시내 가스 점검은 총 5개 민간 회사에서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진행하고 각 민간회사는 각 지역에 센터를 만들어서 다시 업무를 위탁해요.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회사에 근무하는데 서울 지역에 15개의 센터가 있고 보통 대표는 본사에서 내려와서 3년씩 근무하다가 가서 거의 자회사 같아요.”(도시가스점검원 B)

○ 과도한 1인당 업무량

- 2020년 당시의 전국의 4,571명의 여성근로자들이 전국 도시가스 계량기 관리 세대수를 확인하면 1인당 관리세대수는 4,599세대에 이른다고 하고 있음¹¹⁾
- 실제로 인터뷰 대상자들은 2020년 당시보다 약간 줄어들었지만 2023년 3600세대에서 3700세대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세대 주택이나 일반 주택이 있는 경우와 아파트 등이 있는 경우를

10)가스신문, 2020. 10.29 도시가스여성 점검원 근무실태와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결과 내용 중 발췌함

11) 상계서

구분하여 할당량을 정해준다고 함.

- 그러나 해당 할당량이 검침의 경우에는 최근 원룸세대가 증가하면서 도시가스 사용량 검침 대상 수가 증가하고, 계량기가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아 확인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면, 안전점검은 직접 방문을 해야 하는데 업무 시간에 빈 집이 많아 3차례 이상을 방문해야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3600세대라고 하여도 실제 방문은 8000~9000회 이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확인됨
- 실제로 가스 신문 (2020.10. 29)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일 평균 방문세대 수가 100~199세대가 44.9%이고, 200세대 이상인 경우 13.1%인 것으로 확인되어 과도한 업무량을 확인할 수 있음
- 도시가스사업자표준안전관리규정 제36조 제2항의 11호12)에 따르면 가스 사용 시설 사용자가 점검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 근거자료를 확보한 후 사실을 기록 보존함으로써 점검을 3회의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센터에 따라 이부분을 시행하는 곳도 있지만 시행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됨

“각 센터에는 약 40~50명 정도가 있고요. 한 사람당 3600전에서 3700전을 맡아서 진행을 해요. 보통 전이라고 표현하는데 한전 계량기 하나에 한 전이라고 하니까 세대마다 한 전 씩 있다고 보면 되죠.”(도시가스점검원 B)

“문제는 요즘 점검하러 가면 대부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연락해서 고객이 원하는 시간을 맞추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안되는 사람도 있고, 다시 방문하고 하는데 3번을 방문하면 그냥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센터도 있는데 인정해주지 않는 센터도 있어요. 그래서 점검 한 번에 되는 경우가 적고 3600전을 달성하려면 적어도 1 전 당 3번 이상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도시가스점검원 B)

“지역을 그래서 순환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5년마다로 되어 있고, 지역을 또 잘 알아야 하니까 바꾸는 것이 쉽지 않고, 좋은 지역을 하던 사람들은 바꾸고 싶어하지 않

12) 제36조 (시설 안전점검)

② 회사는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1. 가스사용시설 사용자가 안전점검을 거부하는 경우에 회사는 거부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그 사실을 기록·보존함으로써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안전점검 생략은 3회에 한한다.

쥬.”(도시가스점검원 A)

“문제는 아파트도 있지만 단독주택에 산등성이에 있는 집도 많거든요. 특히 종로, 은평, 서대문 이런 곳에는 그런 단독주택이 많아서, 이런 곳은 전 수를 2500정도로 하고 있고 보통은 쉬어서 진행하는데, 이런 곳은 2000 전 정도로 해도 다들 안하려고 해요.”(도시가스점검원 A)

○간주시간근로제와 출퇴근제의 혼용

-도시가스점검원들은 근무시간은 2020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일 순수 근무시간은 평균 7.3시간인 것으로 확인됨.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됨.

-인터뷰 대상자들도 유사한 근무시간을 이야기 하고 있으며, 다만 근로시간제도를 둘러싸고 일부 센터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일부 센터에서는 출근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출근 시간 동안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여 이에 대한 압박이 심한 것으로 확인됨.

-반면 간주시간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상당히 많으며, 실제 도시가스점검원들이 대부분 여성이라 자유로운 시간 활용이 가능한 간주시간근로를 선호하고 있어 센터마다 이슈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

-인터뷰 대상자들의 경우 사실상 고객의 요구 때문에 쉽게 정시출근과 정시퇴근을 진행하기도 어려움. 고객들이 직장을 다니는 경우 고객 출근 전과 퇴근 후에 집중적으로 일하게 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도 허다함. 그래서 초과근로 수당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도 존재함

“저희는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간주근로제를 하고 있어요. 출퇴근을 하면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거지만 저희는 고객이 늦게 퇴근하고 와서 그때 점검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출근 전에 와서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간주근로제를 적용하고 있어요”(도시가스점검원 A)

“출근제로 운영하는 곳과 간주시간근로제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는 출근을 원

하지 않아요. 사실 출근시간 퇴근시간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 장점인데 출근제로 운영하면 점검원들이 많이 그만둘꺼예요”(도시가스점검원 A)

“출근제로 하면 장점도 있죠. 규칙적으로 하고, 저녁이나 이런 때 하면 연장근로수당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 센터 대표는 출근제로 하라고 해서 일부 출근제로 하기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출근제로 하니까 맡은 할당량을 다 못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보게 되고 압박당하고.”(도시가스점검원 B)

○생활임금이 적용되지만 최저 수준

- 도시가스점검원들의 임금은 사실상 고정적으로 도시가스 사용자들이 매달 내고 있는 가스비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회사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도 상당히 고정적인 인건비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
- 2023년 도시가스회사의 직무별 평균 인건비 내역을 살펴보면 점검원의 경우 기본급이 2,141,813원이며, 상여금이 178,484원, 기타급여가 52,266으로 되어 있음. 그리고 연차수당 및 퇴직급여 명목의 급여가 책정되어 있으며, 기타 통상수당이라는 명칭으로 190,000원이 설정되어 있음
- 이에 대하여 인터뷰 대상자들은 기본급과 기타 급여 및 통상수당의 명목으로 생활 임금을 적용받고 있으며, 2023년의 경우 2,331,813원으로 지급받고 있다고 함. 해당금액은 현재 기본급과 기타 통상수당이라는 금액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머지 기타 급여나 연차수당 관련하여 센터장 으로 부터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현재 지급되는 금액 중 기타 급여, 연차 수당 등의 금액이 사용되는 내역이 불명확하며, 연차수당을 받아 본 적이 없고, 간주시간 근로제로 인해 연차는 전부 소진된 것으로 설명 받고 있다고 함
- 다만 실적 급이라고 해서 할당량을 다 채우는 경우 센터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약 20여 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함

“월급은 생활임금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형 임금으로 기본급에 통상수당을 합쳐서 주고 있는데 그래서 거의 월급이 220여 만 원 정도예요. 이 통상수당에 교통

비, 통신비 등 통상수당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여금은 100%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임금협상이 안되어서 21년도 월급으로 받고 있어요.”(도시가스점검원 B)

“센터마다 다르지만 실적급이라고 해서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걸 달성하면 20만원 지급해줘요.”(도시가스점검원 A)

“연차수당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연차축진 이런 것도 없고요. 저희가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니깐 연차라는 것도 별도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고요. 그나마도 노동조합 생기고 나서 그걸로 항의를 하니깐 10일치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거죠”(도시가스점검원 B)

2) 사업장의 안전 관련

○빈번한 안전사고

- 2020.6.1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도시가스점검원들은 계량기 점검을 위한 각종부상, 장시간 이동 및 계단 타기 등으로 인한 미끄러짐, 낙상, 관절 등의 각종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해당 자료에서는 도시가스안전점검원의 72.3%가 사고를 경험하고 있으며, 사고 이후에 치료는 개인부담이 62.8%이고 산재로 처리되는 비중은 10.6%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인터뷰 대상자에 따르면, 다양한 형태로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며, 심지어 점검계량기가 후미진 곳에 있어 개나 고양이가 튀어나와 다치는 경우도 있고, 미끄럼으로 인해 다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됨

“사실 나이가 50대 중반이 많고 점검 후에 기록하면서 걷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겨울에는 미끄러져서 다치거나, 점검 시 계량기가 너무 후미진 곳에 있어서 벌레나 개, 고양이가 튀어나와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옛날 아파트나 산등성이가 있는 곳에서 골절을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도시가스점검원 B)

○ 고객의 성희롱 및 폭언 폭행 등의 위험에 노출

- 도시가스점검원의 경우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객 세대를 방문하여야 함. 그러나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점검을 위해 세대내 가스 장치에 대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성희롱, 고객의 폭언, 및 안전점검 거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도시가스 사용자가 거부 하는 경우 사실상 점검원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교육되거나 훈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방문직종 고객응대 근로자건강보호 매뉴얼을 2021년에 발간하였고 도시가스점검원에 대한 매뉴얼¹³⁾도 작성해 두었음. 그러나 이러한 도시가스 점검원의 매뉴얼을 알고 있지 못하며, 센터를 통해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달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여름에 점검하러 들어가면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옷통을 벗고 속옷만 입고 있기도 하고, 한번은 보일러실을 점검하는 데 냉장고에서 칼을 들고 있기도 해서 너무 질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센터에 이야기를 했더니 앞으로 그 집은 혼자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도시가스점검원 A)

“요즘은 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개가 안문다고 하는데 물기도 하고요. 고객들이 쌀 쌀맞은 고객들이 있어요. 점검을 무슨 사생활 침해라고 하면서 따지는 분도 있고요, 한번은 전자발찌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집을 점검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죠.”(도시가스점검원 A)

“안전 점검 후에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그걸 시정해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시정을 왜 해야 하나고 따지는 분들도 가끔 있고요. 왜 지금 와서 문을 두들겨서 얘기가 깨지 않았냐고 항의하기도 하고, 고객의 갑질이 정말 힘듭니다.”(도시가스점검원 A)

○ 안전교육은 원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의해 도시가스사업자의 안

13) 매뉴얼에는 고객의 문제행동을 1)폭언, 폭행, 성희롱 2) 무리한 요구, 인격적 무시, 업무시간외 수시 연락, 서비스 후 고객물건을 훔쳐갔다고 오해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예방조치로서 각종 방문가구의 성범죄자 조회서비스와 방문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전점검원은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후에는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용시설 점검원은 신규 종사 시에 1회 받도록 되어 있음

-인터뷰에 따르면, 도시가스 점검원의 경우 수습 기간에 교육을 받으며, 1년에 한 번 정도 하루에 교육 대행사로부터 법정 의무 교육을 받으며, 한 달에 한 번 회의 할 때 마다 간단한 교육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수습기간동안 교육 대행사에서 안전교육을 받아요. 몇 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나면 수료증을 주는데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회의 할 때 간단한 교육을 받아요. 회의처럼 하면서 약간 공지 내용을 받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하루 정도 받고, 교육 내용은 법정 의무 교육 같은 내용과 비슷해요”(도시가스점검원 B)

3) 사업장의 폭염관련 대응

○규정은 있으나 권고사항인 격월 검침

- 폭염기간이 되면 계속 이동하면서 업무를 해야 하는 도시가스점검원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6조¹⁴⁾에 따르면 6월~9월까지 격월 검침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강제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므로 사실상 위탁 회사의 재량에 해당하는 사항임
- 그리하여 일부 센터에서는 격월 검침을 하였으나 일부 센터에서는 실시하지 않았음. 특히 도시가스점검원들이 자발적으로 폭염 기간 동안 격월 검침을 실시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례¹⁵⁾도 있었음
- 인터뷰에서도 일부 점검원은 격월 검침을 실시하였다고 하나 일부 점검원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14) 제16조 (검침)① 가스사용량 검침과 요금고지서 송달은 회사가 매월 또는 격월 정례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택용의 경우 취사전용과 하절기(6월~9월) 난방용은 격월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취사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가스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자가검침을 시행할 수 있다.

15) 강북도시가스서비스(주)와 은평도시가스이엔지(주)에서 하절기 도시가스계량기검침을 격월로 시행한 점검원 20명에게 정직 10일에서 60일의 징계를 내리기로 하였으며, 징계이유는 회사지시명령 불이행이었음(오마이뉴스, 2022. 8.10)

“저희도 폭염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2번이나 병원가고, 사람들이 막 쓰러지니까 폭염시기에는 격월 검침을 하게 되었어요. 2019년 이후에 폭염으로 쓰러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6월에서 9월까지 네 달 동안 두 번만 검침하도록 한 거죠. 그런데 그걸 다 시행하지 않고 노조 있는 곳만 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노조원은 격월 검침 하지 않고 다 그냥 하는 거죠.”(도시가스점검원 B)

○ 물 사용 쿠폰 발급

- 폭염 관련하여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일부 센터에서 물을 사먹으라고 쿠폰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2023년 처음으로 2차례에 걸쳐 지급되었음
- 그 외에도 밴드를 통해 폭염 주의보, 폭염경보 시 주의 사항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업무량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서 그늘에 가서 쉬는 경우 다른 시간에 가서 일을 해야 하므로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음

“폭염이 되면 센터장이 밴드에 가능하면 더울 때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올려요. 몇시부터 몇시까지 폭염 주의보가 있으니 업무를 자제하고 물을 섭취하고 시원한 그늘에서 쉬시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실적인 거죠. 예약도 다 되어 있고, 실적 압박도 있고 하니까 안갈 수가 없는 거죠.”(도시가스점검원 B)

“물을 사먹으라고 쿠폰이 3만 원짜리 하나, 2만 원 짜리 하나 받았어요. 올해가 처음이었어요.”(도시가스점검원 A)

○ 쉼터나 온열질환 자각 증상점검표 등의 정보는 부족

- 인터뷰 대상자들은 정부에서 홍보하고 있는 온열질환 자각증상점검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함. 또한 쉼터가 어디에 있는지도 정보를 받아 본적이 없어서 오히려 점검원들이 자체적으로 동네마다 있는 휴게실이나 카페나 화장실 위치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함

“온열질환 관련 자각증상 점검표 이런 거는 본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도시가

스점검원 B)

“쉼터 관련 정보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희들 끼리 자체적으로 정보를 주고 받아서 알고는 있는데 동네마다 한 두 개가 있으면 알기 쉬울 텐데 휴게실이 너무 떠나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고요. 그냥 내 돈 주고 카페 같은 데 가서 화장실도 가야하고 고객한테 연락도 해야 하니까요.”

4) 개선 방향

○ 폭염/폭한 기간의 격월 검침의 실시 의무화

- 인터뷰에서 확인된 개선 방향으로는 폭염기간 뿐만 아니라 폭한 기간에도 격월 검침을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임
- 실제로 격월 검침을 한다고 하더라도 센터나 위탁 받은 민간 회사들은 사용자들이 매달 내고 있는 가스 사용료가 일정하기 때문에 수익적 차원의 문제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가스점검원의 안전을 고려하여 격월 검침을 의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음

“격월검침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가스 사용료는 고객들이 사용한 만큼 내기 때문에 수익적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 거죠. 폭염에 쓰러지는 점검원들을 생각한다면 실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도시가스점검원 B)

○어디에서나 사용가능한 쿠폰의 활용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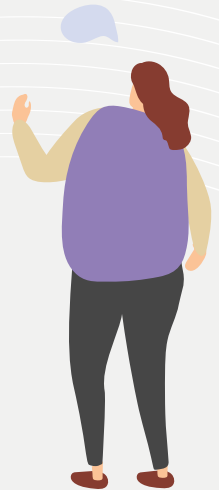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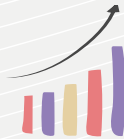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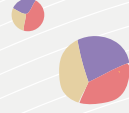
- 도시가스점검원들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수도 없고 이들에 대해 휴게실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자유롭게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폭염 대비 쿠폰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동안 지급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함.
- 실제로 올해 지급되었던 3만원과 2만원 쿠폰을 통해 카페나 편의점 등에서 물이나 찬 음료를 구입할 수 있었고,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화장실활용 및 고객 전화 응대 및 소통을 편안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함. 따라서 폭염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업무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함

- 물론 휴게 시설이 가까운 곳에 설치되는 것이 필요하며, 만일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내 일정하게 휴식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도 차선책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됨

“저희는 이동을 하잖아요. 언젠는 여기서 일하고 또 다른데 일하고 하니까 휴게실을 만드는 것도 공간이 없다고 하니까 구 마다 주민센터나 이런데 조금 설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에어컨도 있으니까요”

“카페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이나 상품권을 주면 저희들이 그곳에서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잠깐 더위도 식히고 물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름에는 쉬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있으면서 충전도 하고요”

III. 결론 및 제언



Ⅲ. 결론 및 제언

1. 폭염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

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내 폭염관련 실질적 조치 포함

○현재 폭염에 대한 부분은 일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의 자연재난에 포함되었음.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 제2항에 2017년 12월 28일에 신설되었고 2022년 8월 10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음

- 그리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폭염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해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폭염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서울시와 은평구에서도 폭염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였음
- 그러나 폭염대응을 위한 행동요령은 KOCHA-GUIDE에서 말하는 물, 그늘, 휴식 및 무더위 시간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을 권고하고 옥외 작업 시 아이스 조끼, 아이스 팩 등 보냉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은 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온열질환자가진단표나 자각증상점검표는 현장 노동자들이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폭염재난 예방대책 설비 지원 사업과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전국의 공사 현장이나 배달 라이더, 도시가스점검원들의 현실을 반영한 대책이 아니다 보니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고열작업에 폭염을 포함)건설노동자들이나 연구자들(신새미 외, 2022)은 폭염관련 대응을 아예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고열 작업에 포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음.

-고열작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와 보건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근로시간까지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해당 규칙 제 559조의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시에 포함된다면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 보건 조치의 의무가 적용되고 이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으므로 각 조치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고열작업의 경우에는 고열 관련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조치로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해 적절한 온도, 습도를 조절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내에서 고열 작업을 하는 경우 환기장치에 대한 설치, 열원과의 격리, 복사열 차단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 열 경련, 열 탈진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 배치 시 고열에 순응할 수 있도록 작업시간을 단계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며, 온도계 등을 작업 장소에 상시 갖추고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고열작업에 폭염관련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조치들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실효성이 훨씬 높아 질 것이며, 옥외 사업장만이 아니라 실내 작업장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 할 것으로 보임

○(실내 작업도 포함)신새미 외(2022)의 연구에 따르면 독일의 예를 통해 작업장의 온도가 26°C 이상인 경우 다양한 조치를 통해 직사광선이 작업장 유입을 막고, 35°C 이상이면 에어 샤워, 워터베일, 열 보호복 등 안전조치를 의무화 하고 있어 폭염에 실외 뿐 만 아니라 실내 작업장에 대해서도 보다 세부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 폭염관련 사항을 고열 작업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현재 폭염관련 적용되어야 할 안전 및 보건 조치의 내용을 물, 그늘, 휴식 외에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법 및 적용 기준을 훨씬 더 세부화 해야 할 것임

○ (체감온도의 유연한 적용) 현장에 적용하는 온도의 기준을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온도 외에 작업장 내에서 측정되는 온도를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건설 현장의 경우 옥외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온도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실제로 건설노조에서 자체적으로 측정한 현장의 온도는 기상청이 발표하는 온도보다 평균 4°C 가 높은 것임

로 조사되었고(건설노조 보도자료, 2023.8.9.), 배달 노동자의 경우에도 도로면의 복사열로 인해 체감온도는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현재 폭염주의보의 기준은 체감온도가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이고 폭염 경보는 체감온도가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될 때 발효 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옥외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폭염 주의보나 경보와 무관하게 현장의 온도를 전제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특히 고열작업에 폭염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관련 직종에 따라 체감온도에 대한 단서 조항을 두고 사업주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나. 폭염관련 작업중지권 행사시 실질적 임금 보장 마련

○ 폭염관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책 중에 휴식부분에 대하여 현장에서는 가장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제51조와 제52조에 따라서 사업주나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문제는 폭염으로 인해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실제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 현장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계속고용의 문제)건설노동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 임금은 보장되고 있으나 일용공이라는 직종의 특성으로 인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제기하고 있음. 물론 해당 법에서는 작업을 중지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임, 또한 고용노동부(2019)의 예시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 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로 붕괴, 폭발, 유해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한 건강 장애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로 제시하고 있어 폭염이 포함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음. 그리하여 인터뷰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해 노동자가 쓰러지는 경우에도 해당 작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라

결국 부분 작업 중지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음

○(기후실업급여) 배달 라이더의 경우 폭염관련 작업 중지와 관련하여 일단 기후 실업급여를 주장하고 있음.

- 배달 라이더의 경우 폭염 등 기후 재난 상황에서 건당 수입을 벌고 있어 일손을 놓기 힘들며, 폭염으로 인해 작업을 중단하게 되면 일시적 실업으로 간주하고 통상 수입의 70%를 지급하는 기후 실업급여를 도입하라고 요구하였음
- 현재의 KOSHA-GUIDE에서 말하는 폭염대책은 물, 그늘, 휴식시간을 제안하고 있으나 해당 사항이 배달 라이더에게는 전혀 적용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점임. 일단 물은 일부 회사에서 쿠폰으로 지급된 적이 있으나 극히 일부사례에 불과하며, 휴식시간은 배달 라이더로 하여금 수입을 줄이는 것이므로 실시 가능하지 않음. 또한 그들은 실제로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는 라이더의 입장에서 그늘이나 휴식공간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어 배달 라이더 노조의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고용직이므로 기상청의 데이터와 플랫폼을 연동해 특정한 경우 주문 접수를 중단하고 자동으로 작업 중지가 이루어지고 기후 실업급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 폭염수당의 경우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라이더 내에서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폭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폭염에 일을 멈추어야 하는데, 라이더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어차피 라이더들이 선택을 하고 있으므로 폭염 하에 배달을 선택한 라이더에게 다른 조건(우천 시 배달료 상승 등)과 마찬가지로 폭염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다. 격월 검침의 의무화

○도시가스점검원의 경우 폭염기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격월 검침의 실시 의무화라고 볼 수 있음. 실제로 해당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가스공급 규정'에 있는 내용이지만 해당 내용의 강제성은 없음. 이로 인해 각 센터는 폭염기간에 자율적으로 격월 검침을 시행한 점검원들을 징계하는 사례까지 있어서 오히려 폭염에 대한 정부 지침을

역행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음

- 실제로 도시가스점검원에 대한 안전 보건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해당 시행령 및 규칙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조¹⁶⁾ 제2항에 안전점검원의 직무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있으며 도시가스안전점검원의 근로조건 관련 내용은 ‘도시가스안전관리 규정’에 의해 안전점검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서울시 도시가스공급규정’으로 해당 검침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그 실행력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기초한 격월 검침은 강제력을 가지기 어려우며, 폭염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시행규칙에 해당 안전보건 조치의 일환으로 제도화 될 필요가 있음

2.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지원 마련

가. 물과 미네랄, 기타 사용가능한 쿠폰의 안정적 공급

○(안정적, 지속적 물 공급) 건설노동자를 제외하고 배달라이더나 도시가스점검원들의 경우 물조차도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을 다수 확보하고 이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은평구도 생수 2000병을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속적으로 장소를 이동하는 노동자들은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

- 배달 라이더의 경우 생수를 지급받기 위해 이륜차를 주차해야 하는 문제, 도시가스점검원의 경우 걸어서 생수 지급하는 곳으로 별도 이동을 해야 하므로 효용성이

16) 제6조(안전관리자의 업무)

-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안전점검원은 정압기·가스배관 및 그 부속설비의 안전관리업무에 한한다.
 1.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3.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의 작성·보존
 4.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감독
 5. 그밖의 위해방지조치
- ②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각호의 직무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된다.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음

- 따라서 오히려 보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쿠폰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일정 금액으로 지급되어 활용 가능성이 높도록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음
- 예를 들면 2023년 쿠팡이츠에서 지급한 생수 쿠폰은 전 주 10건 이상 꾸준히 배달을 수행한 배달파트너에서 문자메시지로 생수교환권을 지급하였음¹⁷⁾. 그러나 이렇듯 제한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물론 해당 사용자 회사에서 지급할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온누리 상품권과 같이 물을 살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며, 만일 쿠폰 지급이 어렵다면 접근성이 좋은 각 주민센터 1층에 물을 비치해두고 배달라이더나 도시가스점 검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미네랄 등의 보급)미네랄 등의 지급에 대해서는 건설 노동자의 경우에는 땀을 많이 흘리고 육체노동을 하기 때문에 이미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배달노동자나 도시가스점검원은 전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자칫 탈진을 하기 쉬운 야외 노동자를 위해 이런 부분을 배치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함.

○(쿨 스카프나 쿨 토시 증지)쿨 스카프나 쿨 토시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별로 호응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의 예산을 돌려 현장노동자의 요구에 맞게 물만이 아니라 카페에서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을 위한 다양한 쿠폰의 발행도 현장에서 환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임

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의 마련

○(현장중심의 체감온도 추가) 현재 폭염관련 행동지침에 대한 내용은

17)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726>

KOSHA-GUIDE가 전부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해당 내용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보다 집행력이 강한 법이나 령 또는 규칙이 아니므로 현장에 잘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가이드의 내용이 현장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함.

- 현장에서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를 발령하고 있지만 건설현장에서는 기상청 발표 체감온도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를 체감하고 있으며, 배달 라이더 역시 아스팔트의 복사열로 인해 훨씬 더 높은 온도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전체 폭염특보에 대한 기준 외에 현장에서 별도의 기준온도를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이 마련되어 제시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면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일부 회사의 안전모 센서를 통한 현장온도측정으로 작업 중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확대될 필요성이 있는 좋은 사례로 보임
- 그러나 안전모 구입에 대한 비용이 부담될 수 있으므로 건설현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온도 측정과 작업 여부를 규정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제시되는 것이 필요함. 동어 반복적인 물, 그늘, 휴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건설노동자의 현장의 특성에 맞는 행동 지침이 필요함
- 또한 해당 내용에는 직종별 대응 행동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야외노동자에 대한 직종별 대응 행동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각 안전보건 관련 매뉴얼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도시가스점검원의 경우 안전보건 공단에서 발행한 매뉴얼이 있음.

-해당 내용에는 폭언, 폭행, 성희롱,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 과 같은 고객의 문제행동, 그리고 무리한 요구, 인격적 무시, 업무시간외 수시 연락, 서비스 후 고객의 물건을 훔쳤다고 오해하는 경우 등의 유형을 분류하였고, 이러한 행위들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 2(고객 등에 대한 성희롱 방지)와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14조(업무 방해) 그 외 형법 제260조(폭행), 제257조(상해),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등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음을 적시하고 있음. 그리고 업무 폰에 SOS 요청 프로그램을 삽입하는 등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해당 내용에는 폭염 시 대응 요령이나 기타 안전관련 내용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도시가스점검원의 매뉴얼 내 폭염

시 대응 요령 등을 만들어 반영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임

〈표16〉 도시가스점검원 매뉴얼

구분	유형 내용
성희롱 ¹⁾	• 방문 시 검침과 무관한 말을 하거나 행동으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
욕설, 폭언 ²⁾	• 점검·검침을 오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난폭하게 말을 하는 경우
폭력 ³⁾	• 점검·검침 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 ⁴⁾	• 반려견이 있을 때, 너무 많이 짖고 위협적임 • 반려견에 물려서 상처가 남
무리한 요구	• 전화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 • 다단계 물건이나 00코인을 구매해달고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 • 방문할 때 물건을 사오라고 하는 경우 • 집에서 나가는 길에 쓰레기 좀 버리라고 하는 경우
인격적 무시	• 점검·검침원을 감염원으로 인식하고 얘기도 없이 소독약을 등 뒤에서 뿌리는 경우 • 점검·검침원에게는 ‘아줌마’, ‘네가’ 라는 호칭으로 낮게 부르면서 자신은 고객으로 대우받기를 원하는 경우
업무시간 외 수시연락	• 고객이 자신이 집에 있는 시간이라고 밤12시, 주말 상관없이 전화해서 오라고 하는 경우
서비스 후 고객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오해하는 경우	• 고객이 자신의 물건이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고, 나중에 점검·검침원에게 훔쳐갔다고 하는 경우

(출처: 안전보건공단, 2021, 도시가스점검원 매뉴얼)

다. 실효성 있는 쉼터 마련과 홍보 강화

○ 현장의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은 실효성 있는 쉼터의 마련이 되지 않는 다는 것임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폭염에 대비하여 상시일반 쉼터 외에 폭염 특보 발령 시 연

장 쉼터, 야간 쉼터 등을 연계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은평구는 스마트 쉼터라고 하여 버스 정류소 9곳에 설치하였음. 그 외 노인 및 취약 계층을 위한 폭염 대비 예방 활동을 전개 하였음

- 그러나 배달노동자와 도시가스점검원을 위한 폭염 예방 쉼터의 마련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2021.9.30.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8조(지원사업)에 무더위 쉼터 확대를 운영 및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무더위 쉼터에 냉방장비 수리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배달라이더나 도시가스 점검원들과 같은 이동 노동자를 위한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로 이를 위한 정책도 확인되지 않음

- 인터뷰에서는 차라리 별도의 쉼터 공간을 마련하기보다, 현재 존재하는 주민센터에 설 수 있도록 식수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음. 주민센터가 아니면 각 지역의 공동 시설에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물품을 지원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라. 직종별 자가 점검 및 진단표 마련

○ 현재 마련되어 있는 온열질환 자가진단표와 온열질환 자각증상 점검표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들은 전부 본적이 없고 적용된 바도 없다고 함. 이러한 부분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는 홍보 효과가 부족하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자가 진단표의 내용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10개 문항 상당수가 주관적이며, ‘최근 힘든일이 있어 심신이 지쳐있다’, ‘나는 일을 시작하게 되면 실재없이 전념하게 된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가급적 스스로 한다’ 는 등의 질문은 온열 질환과 관계 없는 질문이며, 온열질환자를 가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온열질환으로 증상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질문도 주관적이라는 것임(서울경제, 2022.7.19.)

- 문제는 해당 내용을 현장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증대재해처벌법은 열사병 사망자가 1명 또는 1년 이내에 열사병 환자가 3명 이상 발생하면 적용을 받기 때

문에 현장에서 해당 내용을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임

- 따라서 직종별로 작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발생가능한 온열질환 자가 진단을 체크 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작업 시작 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폭염기간의 예방효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3. 조례 개정을 통한 대책 강화

가. 폭염관련 취약 계층에 대한 검토

○ 폭염관련 서울 시 자치구의 조례는 총 39건이 있음. 각 내용은 대부분 동일하지만 폭염관련 취약 계층에 대한 정의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예를 들면 서울시, 중랑구, 서초구의 경우에는 폭염관련 취약 계층에 대한 개념을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 제9호의 3호18)의 안전 취약 계층을 말하고 있으나 은평구를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 소년 소녀 가장, 한 부모 가족 등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구체화 되어 있음. 문제는 이러한 범위에는 배달라이더나 도시가스점검원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물론 해당 내용에서 대상들이 상당히 중첩되는 측면이 있으나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이라는 정의에서는 배달라이더나 도시가스점검원등이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포함될 여지는 있음
- 그러나 은평구 조례에서는 구체적인 적시가 없으며, 물론 “... 등 우선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좀 더 명확하게 적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서울시의 조례와 같이 적용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 물론 별도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가 2018.11.15. 제정

18)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되어 있고 재난의 범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에 대한 개념을 준용하고 있어 자연 재난에 폭염이 들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으나 별도의 폭염관련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적용할 여지는 명확하지 않아 보임. 또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는 재난 취약 계층에 대한 정의도 없음. 따라서 보다 명확하게 폭염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그 범위를 바꾸거나 별도의 조항 추가를 통해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표17〉 조례 내 폭염취약계층의 범위에 대한 내용 비교

	서울특별시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 9의3	장애인복지법의 제2조의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 소년 소녀 가장, 한 부모 가족 등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폭염지원 내용에 대한 검토

○ 폭염 지원 내용에 대한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울 시의 경우에는 폭염을 자연 재난으로 전제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무더위 쉼터와 더불어 차양막, 그리고 온열질환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만일 폭염 취약계층으로 배달라이더나 도시가스 점검원이 포함될 경우 쉼터와 기타 온열질환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반면 은평구의 경우 일단 폭염취약계층의 범위에도 들어가 있지 않으며 더불어 지원 내용도 재난 도우미의 방문 관리나 선풍기 등의 냉방물품 지원으로 되어 있어 야외에서 이동 노동자를 위한 고려나 지원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폭염취약계층에 야외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적절한 지원내용을 명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표18〉 조례 내 폭염관련 지원내용에 대한 내용

	서울특별시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내용	<p>제9조 (폭염취약계층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 2.선풍기등 냉방물품보급 3.무더위 쉼터, 살수 시설, 차양막 등 폭염회피 저감시설설치사업 4.온열질환의료비 지급 5.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9조 (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 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지원 3.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참고문헌〉

- 건설노동조합, 2023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2023 각종 보도자료
- 대한건설협회, 2023, 2023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시중노임단가)
- 문병두·박주동·강준혁·박장현·전소영·강성운·백빛나, 2021, 국내 산업별/직종별 특성과 사망사고 발생 위험분석 연구(I),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연구보고서
- 민순홍, 2023, 플랫폼 노동선택의 결정요인과 플랫폼 종사자의 직업이동 경로 분석, 연구자료 2023-01, 산업연구원
- 배재현, 2021, 감염병 시대 폭염재난 대응의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861호
- 산업안전보건공단, 2022,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지침: KOSHA GUIDE.
- 산업안전보건공단, 2021, 도시가스점검원 매뉴얼
- 서울시, 2023 서울시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 2023.6.13. 보도자료
- 신세미·변상훈·심상효, 2022, 폭염·한파 건강장해 예방조치 개선 방안 연구, 안전보건공단
- 신태중·이상범·박종국, 2018, 서울지역 건설일용직 노동실태와 지원방안,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보고서 2018-04
- 은평구 홈페이지
- 이원희, 2020, 은평구 배달노동자 노동실태조사보고서, EPLC 2020-R01,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전기신문, 2021. 5.11. 60개 통합직종 건설근로자 기능 등급제 시행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채수미·최지화·최소영·황남화·우경숙·정휘철, 2020, 폭염 민감계층의 건강피해 최소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18
- 채여라·최영웅·김태현·황인철·변지민·박태우, 2019,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경제적 환경

여건별 폭염 체감 영향분석, KEI 정책보고서, 2019-18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 방문노동의 위험과 개선방안-도시가스안전점검원 노동실태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2023, 2023년 폭염 종합대책

발행일 2023년 12월 10일
발행인 강화연
발행처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주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045
대표전화 02-6952-1875
홈페이지 eplabor.org
디자인 작은성공작소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Eunpyeong-gu Labor Support Center

